



# 해외 주요국가의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제도 연구

## 연구진

윤영근(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박해육(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안영훈(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

주요국가의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제도 요약 .....	1
제1장 서론 .....	5
제1절 연구의 목적 .....	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8
1. 연구의 범위 .....	8
2. 연구의 방법 .....	8
제2장 해외 주요 국가의 부단체장 제도 .....	9
제1절 영·미권 국가 .....	11
1. 미국 .....	11
1) 뉴욕 .....	11
2) 로스앤젤레스 .....	17
2. 영국 .....	21
1) 런던 .....	21
2) 레스터 .....	30
제2절 유럽 국가 .....	37
1. 프랑스 .....	37
1) 파리 .....	37
2) 마르세유 .....	43
2. 독일(베를린) .....	48
제3절 아시아 국가 .....	54
1. 일본 .....	54
1) 도쿄도 .....	54



2) 가나가와현 .....	62
2. 중국(베이징) .....	69
<b>제3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b>	<b>77</b>
제1절 부단체장 제도의 유형화 .....	79
제2절 정책의 시사점 .....	81



주요국가의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제도 요약



## □ 주요국가의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제도 요약

국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
	뉴욕	로스앤젤레스	런던	레스터	파리	마르세유	베를린	도쿄	가나가와	베이징
자치단체 규모	인구 : 8,405,873명 면적 : 1,214.1km <sup>2</sup> 공무원 : 296,658명	인구 : 3,888,378명 면적 : 1,302km <sup>2</sup>	인구 : 8,308,369명 면적 : 1,572km <sup>2</sup>	인구 : 329,600명 면적 : 73.32km <sup>2</sup>	인구 : 2,201,578명 면적 : 105.4km <sup>2</sup> 공무원 : 약5만명	인구 : 850,636명 면적 : 240.62km <sup>2</sup>	인구 : 3,513,026명 면적 : 891.85km <sup>2</sup>	인구 : 13,290,000명 면적 : 2,187.66km <sup>2</sup> 공무원 : 167,243명	인구 : 9,097,401명 면적 : 2,416.04km <sup>2</sup> 공무원 : 73,399명	인구 : 21,150,000명 면적 : 16,808km <sup>2</sup>
근거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ity Charter 제 7조</li> <li>• Executive Order 157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ity Charter Sec.231.</li> <li>• administrative code Sec.3.1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reater London Authority Act 제 38조, 제 49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ocal Government Act 2000. 11조 및 별표 1 규정</li> <li>• Leicester City Council Constitution</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ode général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통합지방자치법전) L2122-2, L2122-7-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ode général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통합지방자치법전) L2122-2, L2122-7-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Verfassung von Berlin (베를린헌법) 제 56조</li> <li>• Geschäftsordnung des Senates Berlins (참사회직무규정) 제 4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地方自治法 제 161조</li> <li>• 東京都副知事の定数条例 (도쿄도 부지사 정수 조례)</li> <li>• 東京都知事の職務代理順序に関する規則 (도쿄 도지사의 직무대리 순서에 관한 규칙)</li> <li>• 東京都副知事の担任事項 (도쿄도 부지사의 담임사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地方自治法 제 161조</li> <li>• 神奈川県副知事定数条例 (가나가와현 부지사 정수 조례)</li> <li>• 神奈川県知事の職務代理の順序に関する規則 (가나가와현 지사의 직무대리 순서에 관한 규칙)</li> <li>• 神奈川県副知事の担任事項を定める規程 (가나가와 부지사의 담임사항 규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中华人民共和国宪法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101조</li> <li>• 中华人民共和国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和 地方各级人民政府组织法 (중화인민공화국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정부조직법)</li> <li>• 北京市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任免国家机关工作人员条例 (베이징시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의 국가기관 공직자의 임명과 파면에 관한 조례)</li> </ul>
법정 정수 (현원)	6명 (현재 4명)	없음 (현재 4명)	없음, 법정 부시장은 1명 (현재 7명)	1명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30% 이하 (현재 21명)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30% 이하 (현재 30명)	2명	4명 (현재 3명)	3명 (현재 2명)	8명
기관 구성	시장-의회 기관대립형	시장-의회 기관대립형	시장-의회 기관통합형	시장-의회 기관통합형	시장-의회 기관통합형	시장-의회 기관통합형	시장-의회 기관통합형	시장-의회 기관대립형	시장-의회 기관대립형	의회에서 선출함

국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
	뉴욕	로스앤젤레스	런던	레스터	파리	마르세유	베를린	도쿄	가나가와	베이징
명칭	Deputy Mayor (부시장)	Deputy Mayor (부시장)	Deputy Mayor (부시장)	Deputy City Mayor (부시장)	Les adjoints au maire de Paris (파리 부시장)	Les adjoints au maire de Marseille (마르세유 부시장)	Bürgermeister (시장) ※ 의회에서 선출된 베를린시장은 동치시장 (regierender Bürgermeister)으 로 칭함	東京都臨知事 (도쿄도 부지사)	神奈川県副知事 (가나가와현 부지사)	北京市人民政府 副市长 (베이징시 부시장)
임명 방식	시장이 임명	시장이 임명	의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의원들로 구성된 내각(Council) 구성원 중 한명을 시장이 임명	의원들의 투표로 선출	의원들의 투표로 선출	참사회 구성원 가운데 동치시장이 임명	의회의 동의를 얻어 도쿄도 지사가 임명	의회의 동의를 얻어 가나가와현 지사가 임명	베이징시 인민대표회의에 서 선거로 선출 실질적으로는 공산당이 선발에 개입
업무와 권한	제1부시장 보건복지부시장 전략정책부시장 주택·경제부시장	시장실 소속의 정책보좌 역할 -예산·혁신 -도시서비스 -안전 -경제	시장실에서 시장 의 정책 자문과 분야별 업무 관리 -법정부시장 -주택·토지자산 -교통 -치안 -정책기획 -산업 -교육·문화	현재 부시장은 공 공보건 분야를 담 당하고 있으며, 시 장 결위 시 시장을 대리함. 다른 내각 위원들은 Assistant City Mayor 역할 을 함	21명의 부시장은 각 국의 업무에 따라 개별적인 행정권을 위임받 아 기능을 분담 하고 있으며, 파 리시장의 업무를 보좌함	30명의 부시장은 각 국의 업무에 따라 개별적인 행정권을 위임받 아 기능을 분담 하고 있으며, 시 장의 업무를 보 좌함	동치시장 부재 시 혹은 유고 시 대행 자의 역할 -현재 내무·스포 츠 참사회위원과 도시개발·환경 참 사회위원이 2명이 시장을 맡고 있으 며, 각 소관 부처 의 관리 책임을 짐	단체장을 보좌하며, 3명의 부자사는 담 당사무의 직원들을 감독하고, 단체장 유고시 직무를 대 리함	단체장을 보좌하 며, 2명의 부자사 는 담당사무의 직 원들을 감독하고, 단체장 유고시 직 무를 대리함	시장부 소속 45개 국급 부서에서 8 명의 부시장이 각 자 맡은 업무에 해당하는 관련부 서를 책임짐
신분과 임기	공무원, 정무직공 고정임기 없음	정무직 공무원 고정임기 없으나 대체로 시장과 동일한 4년	의원 고정임기 없음	의원 시장임기와 동 일한 4년	의원 고정임기 없음	의원 고정임기 없음	정무직 공무원 고정임기 없음	공무원 임기는 4년	공무원 임기는 4년	공무원 임기는 5년, 1회 연임 가능
보수 수준	연 \$212,614~ \$245,760	연 \$148,000~ \$165,000	연 £ 97,000~ £ 150,000	연 £ 39,474.50	연 €30,107	연 €30,107	연 €135,600	연 ¥ 14,508,000	연 ¥ 11,136,000	월 1만~2만 위안
	한화 약 ₩2억3천6백만~ ₩2억7천3백만	한화 약 ₩1억6천4백만~ ₩1억8천3백만	한화 약 ₩1억6천8백만~ ₩2억6천만	한화 약 ₩6천7백만	한화 약 ₩4천128만	한화 약 ₩4천128만	한화 약 ₩1억8천7백만	한화 약 ₩1억3천5백만	한화 약 ₩1억4백만	월 한화 약 ₩180만~ ₩360만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제1장

## 서론

### 제1절 연구의 목적

- 지방자치단체 행정이 전문화되고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시장을 보좌하는 부단체장의 정수 확대 또는 자율적으로 정수를 정하도록 하는 요구가 있음
- 최근 분야별 또는 지역별로 다양한 부단체장 증원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음
- 투자유치, 주민소통 등 자치단체의 대외적 활동이 증감함에 따라 단체장을 대신할 부단체장의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부단체장 정수 확대에는 한계가 있어 별도의 대안 마련이 필요함
- 국가별로 부단체장의 역할이나 업무범위 등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정수만을 비교하는 등 체계적인 해외사례 연구가 부족하고, 이에 따른 자치단체의 증원 요구 등으로 인해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 이 연구는 해외 주요국의 부단체장 운영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부단체장 제도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 연구의 범위

- 조사대상 국가
  - 미국(뉴욕, LA), 영국(런던, 레스터), 프랑스(파리, 마르세유), 독일(베를린), 일본(동경도, 가나가와현), 중국(베이징)
- 제도운영의 측면
  - 단체장 정수, 명칭, 보수, 역할, 권한, 임명방법, 설치 근거법령 등 조사
  - 공무원 정원, 조직의 규모(실·국·본부 설치기준, 과 수), 조직의 구조(업무별 행정계층), 조직도 등
  -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단체장인지”, 아니면 “우리의 실·국장급” 혹은 “특보 같은 보좌진인지”를 분석함

### 2. 연구의 방법

- 문헌조사
  - 부단체장 제도 운영에 대한 연구자료, 부단체장 제도 운영 현황 자료
- 전문가 워크숍
  - 다양한 언어권의 국가들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관계로 영미권, 일본, 프랑스, 독일, 중국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조사 지원 및 워크숍 실시

# 제2장

## 해외 주요 국가의 부단체장 제도

제1절 영·미권 국가

제2절 유럽 국가

제3절 아시아 국가



## 제2장

## 해외 주요 국가의 부단체장 제도

## 제1절 영·미권 국가

## 1. 미국

## 1) 뉴욕

## ○ 시의 규모 및 기관구성의 유형

- 인구 : 8,405,873명(2013년)
- 면적 : 1,214.1km<sup>2</sup>
- 공무원 : 296,658명(2012년)
- 뉴욕시는 기관대립형인 시장-의회형(mayor-council)을 취하고 있으며, 이 유형의 대도시 지역은 대체로 강시장형으로 분류됨

## ○ 근거법령

- 뉴욕 City Charter (2009. 12) §.7. Deputy mayors.
- 뉴욕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No. 157) (2011. 9)

## □ 뉴욕 City Charter 제7조

§ 7. Deputy mayors. The mayor shall appoint one or more deputy mayors with such duties and responsibilities as the mayor determines.

제7조. 부시장. 시장은 한 명 이상의 부시장을 임명하여야 하고, 그 의무와 책임은 시장이 정한다.

## □ 뉴욕시 행정명령 제157호

By the power vested in me as Mayor of the City of New York, it is hereby ordered:

Section 1. There shall be six Deputy Mayors. One shall be designated the First

Deputy Mayor, one shall be designated the Deputy Mayor for Legal Affairs, one shall be designated the Deputy Mayor for Economic Development, one shall be designated the Deputy Mayor for Operations, one shall be designated the Deputy Mayor for Government Affairs and Communications, and one shall be designated the Deputy Mayor for Health and Human Services. All Deputy Mayors shall collaborate with one another to ensure well coordinated policies, operations, and administration of government.

뉴욕시장으로서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1절. 6명의 부시장을 둔다. 그 중 한명은 제1부시장으로 임명하고, 나머지는 법무 담당 부시장, 경제개발 담당 부시장, 운영 담당 부시장, 정무·소통 담당 부시장, 보건 복지 담당 부시장으로 임명한다. 모든 부시장은 정책을 보장할 수 있도록 상호협력하여야 한다.

○ 부단체장 정수

- 행정명령(Executive Order No. 157)에 총 6명을 규정
- 2014년 1월 Bill de Blasio 시장 취임 후 4명 임명

○ 부단체장 명칭

- 제1부시장(the First Deputy Mayor)
- 보건복지부시장(the Deputy Mayor for Health and Human Services)
- 전략정책부시장(the Deputy Mayor for Strategic Policy Initiatives)
- 주택·경제부시장(the Deputy Mayor for Housing & Economic Development)

○ 부단체장 임명방식

- City Charter §.7 및 행정명령(Executive Order No. 157) section.1. 부단체장은 시장이 직접 임명

○ 부단체장 업무와 권한

① 제1부시장(the First Deputy Mayor)

- 제1부시장은 아래의 업무 부서를 직접 감독하고 업무를 조정
  - 소방, 위생, 교정, 환경, 교통, 공원



- 문화, 디자인·건설, 건축물, 재정, 보호관찰, 사법
  - 행정심판·소청, 계약, 장애인지원, 이민, 노동, 보훈, 총무, 기록·정보 서비스
  - 정보통신기술, 기획, 환경조정, 환경복원, 기업윤리
  - 제1부시장은 아래와 연락관계 유지
    - 연방 및 정부 간 관계 담당자, 수석보좌관, 교육감
    - 보건복지부시장, 전략정책부시장, 주택·경제부시장
    - 경찰, 의회, 각종 위원회
  - 시장을 대신하여 혹은 시장이 지시한 업무를 처리하며, 시장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시장의 모든 권한과 의무를 수행
- ② 보건복지부시장(the Deputy Mayor for Health and Human Services)
- 제1부시장은 아래의 업무 부서를 직접 감독하고 업무를 조정
    - 심신건강, 병원, 사회복지, 아동복지, 노인, 노숙인, 청소년, 가정폭력
    - 의료조사, 식품정책, 데이터정보센터
  - 건강, 에이즈, 보건복지 관련 위원회와 업무 연락관계 유지
  - 기타 시장이 지시한 업무 수행
- ③ 전략정책부시장(the Deputy Mayor for Strategic Policy Initiatives)
- 전략정책부시장은 아래의 업무 부서를 직접 감독하고 업무를 조정
    - 취학전·방과후 학교 운영, 지역사회학교, 아동보호, 청년지원
  - 기타 시장이 지시한 업무 수행
- ④ 주택·경제부시장(the Deputy Mayor for Housing & Economic Development)
- 주택·경제부시장은 뉴욕시의 경제정책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해 시장의 업무를 지원하고 자문
  - 아래의 업무 부서를 직접 감독하고 업무를 조정
    - 도시계획, 주택개발, 경제개발, 소상공인, 소비자보호, 기념건축물보존, 미디어·여가, 공공디자인 등
  - 기타 시장이 지시한 업무 수행

○ 부단체장 신분과 임기

- 부단체장은 직업 공무원 혹은 민간전문가 출신이며, 민간전문가 출신의 부단체장은 시장과 함께 정무직 공무원의 신분을 가짐
- 제1부시장인 Anthony Shorris는 1978년에 공직에 입문한 공무원 출신임
- 보건복지부시장인 Lilliam Barrios Paoli는 정부와 NPO 단체에서 모두 경력을 쌓은 전문가임
- 전략정책부시장인 Richard Buery는 아동지원 NPO 활동을 통해 국내 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한 민간전문가임
- 주택·경제부시장인 Alicia Glen은 변호사 출신으로 각종 정부 위원회에서 활동한 민간전문가임
- 부시장들의 임기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으며, 시장에 의해 결정됨

○ 부단체장의 보수 수준

- 제1부시장의 연봉은 \$245,760(한화 약 2억7천3백만원)로, 시장의 연봉 \$225,000(한화 약 2억5천만원) 보다 높음
- 나머지 3명의 부시장은 \$212,614(한화 약2억3천6백만원)으로 동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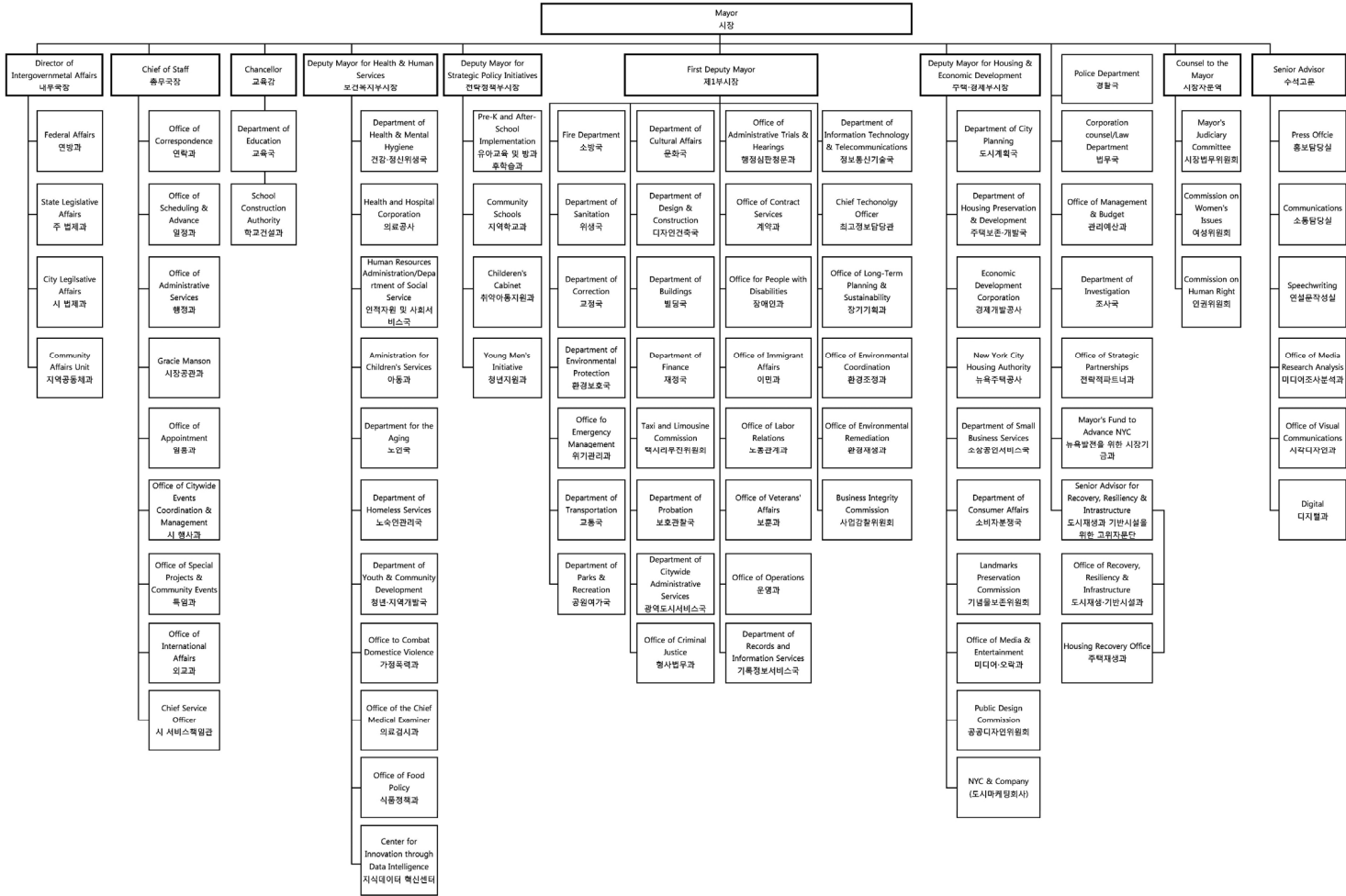
○ 뉴욕시 조직도

- 다음 장의 조직도에서 보듯이 뉴욕시는 제1부시장 아래 총 29개의 단위 부서(국 수준)를 배치하여 시의 가장 중심적인 운영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시장은 총 11개, 전략정책부시장은 총 4개, 주택·경제부시장은 10개의 단위부서(국 수준)를 담당하고 있음
- 기타 주요 부서는 내무국, 총무국, 교육감, 경찰국, 법무국 등이 있으며 시장 자문기관과 전문 수석고문들이 시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소결

- 뉴욕시의 부시장은 제1부시장을 비롯한 4명의 부시장이 모두 주요 집행조직의 책임자임
- 제1부시장이 시장의 우선 대행자로서 역할을 하지만, 조직상 한국의

실·국장급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업무 분야별 전문 부서장으로  
기능하고 있음



## 2) 로스앤젤레스

## ○ 시의 규모 및 기관구성의 유형

- 인구 : 3,888,378명(2013년)
- 면적 : 1,302km<sup>2</sup>
- 로스앤젤레스시는 기관대립형인 시장-의회형(mayor-council)을 취하고 있으며, 이 유형의 대도시 지역은 대체로 강시장형으로 분류됨

## ○ 근거법령

- 로스앤젤레스 City Charter Sec.231. (2014. 9)
- 로스앤젤레스시 행정규칙(administrative code) Sec.3.10. (2014. 9)

## □ 로스앤젤레스 City Charter Sec.231.

Powers and Duties.

The Mayor shall have the power and duty to:

(a) exercise management authority over all departments, agencies and appointed offices of the City, except where the Charter provides otherwise;

(b) appoint and remove staff as may be needed to perform the duties and carry out the responsibilities of the Mayor's office, subject only to budgetary appropriation;

시장은 다음의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a) 현장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부서, 부속기관, 그리고 임명된 시 공무원에 대한 관리권

(b) 예산 범위 내에서 시장실의 임무를 수행하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필요한 직원들의 임명과 해임

## □ 로스앤젤레스시 행정규칙 sec.3.10.

Mayor is Chief Executive.

The Mayor, ex officio, shall be Chief Executive of said Department and there shall be one First Executive Deputy and one Second Executive Deputy, and such other deputies and employees as the Council by ordinance may provide.

The Mayor, as such Chief Executive of said Department, may appoint the Deputies

herein provided for, and such assistants, deputies, clerks, stenographers and other persons as the Council shall prescribe; and shall have power to remove the same.

시장은 최고 경영자이다.

시장은 앞서 소개한 시정부의 최고 책임자이며, 수석 집행부시장과 제2 집행부시장, 그리고 법령에 의해 의회가 허용하는 다른 부시장들과 직원을 둘 수 있다.

시정부의 최고 경영자로서 시장은 이 규칙에서 허용하는 부시장들을 임명할 수 있고, 보조원, 대리인, 사무원, 속기사와 의회에서 정한 사람들을 임명할 수 있으며, 이들을 해임할 수 있다.

- 부단체장 정수
  - 부단체장의 정수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현 시장인 Eric Garcetti는 4명의 부시장을 시장실(Mayor Chief Executive)에 두고 있음
- 부단체장 명칭
  - 4명의 부시장은 모두 'Deputy Mayor'로 칭함
- 부단체장 임명방식
  - 행정규칙(administrative code) Sec.3.10. 에는 시장이 부시장들(Deputies)을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부단체장 업무와 권한
  - 현재 로스앤젤레스시의 부시장은 집행조직의 책임자가 아니며, 시장실에서 시장의 정책을 보좌·자문하는 활동을 하고 있음
  - 현재 4명의 부시장은 예산·혁신(Budget and Innovation), 도시서비스(City Services), 안전(Homeland Security and Public Safety), 경제(Economic Development) 등 각 분야에 1명씩임
- 부단체장 신분과 임기
  - 부단체장은 공무원 혹은 민간전문가 출신이며, 부단체장은 시장과 함께 정무직 공무원의 신분을 가짐
    - 예산·혁신 분야를 담당하는 Rick Cole은 캘리포니아주의 여러 도시에

서 City Manager를 역임한 공무원 출신임

- 도시서비스 분야를 담당하는 Doane Liu는 구글, JP모건 등에서 근무하였고, 2001~2005년 로스앤젤레스 유권자 서비스 담당 부시장을 역임하였음
  - 안전 분야를 담당하는 Eileen M. Decker는 변호사 출신으로 2009년부터 이 분야의 부시장을 맡고 있음
  - 경제 분야를 담당하는 Kelli Bernard는 로스앤젤레스 경제기획위원회와 수도권전기국 책임자로 활동한 공무원 출신임
- 부시장들의 임기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대체로 시장의 임기와 같은 4년임

○ 부단체장의 보수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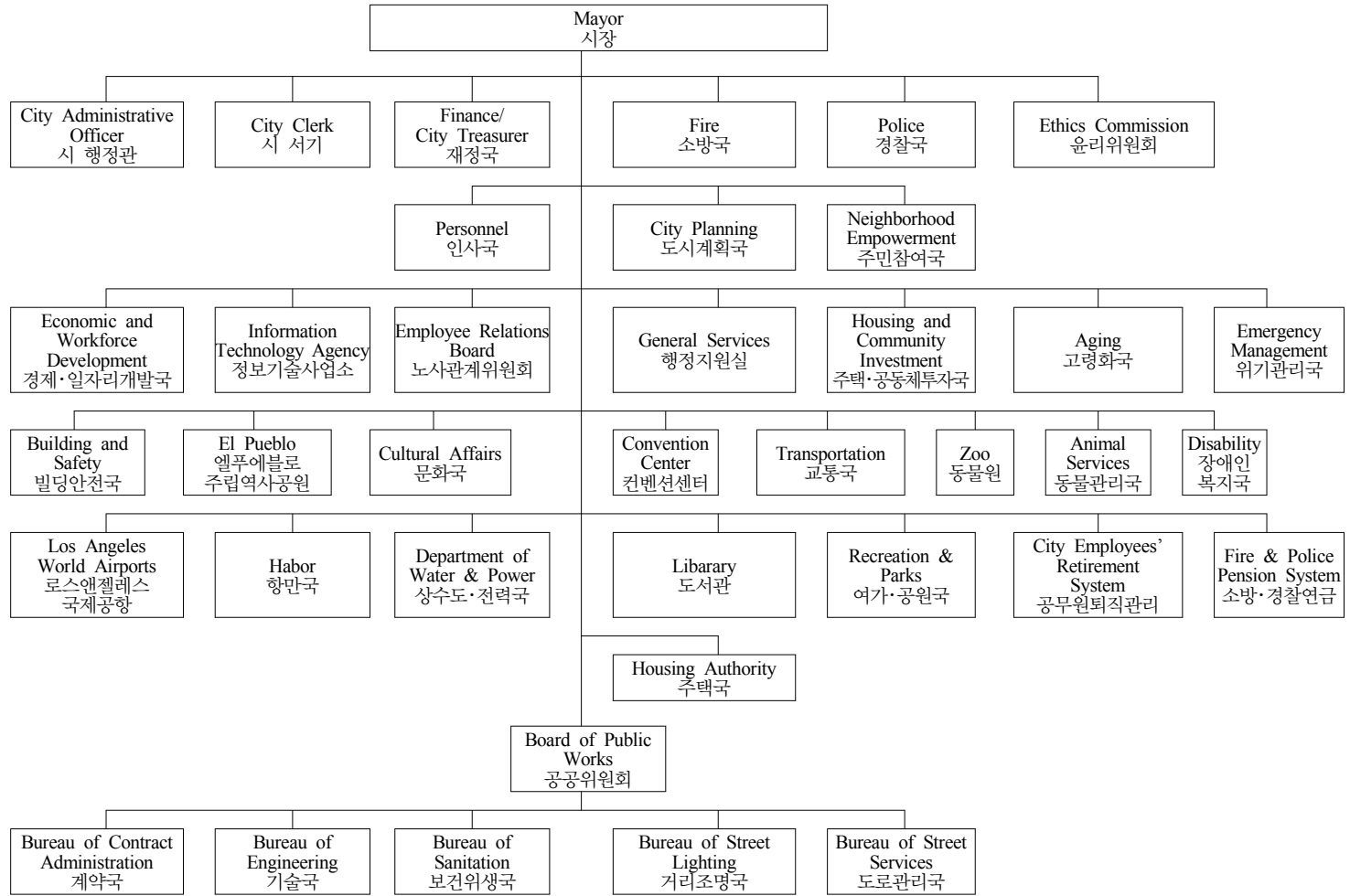
- 부시장의 연봉은 경력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대체로 \$148,000(한화 약 1억6천4백만원)에서 \$165,000(한화 약 1억8천3백만원) 수준임
- 참고로 시장의 연봉은 \$232,400(한화 약 2억5천8백만원) 수준임

○ 로스앤젤레스시 조직도

- 다음 장의 조직도에서 보듯 시의 주요 업무는 시 행정관을 비롯해 재정국, 소방국, 경찰국, 인사국, 도시계획국 등 주요 부서의 책임자가 시장 직속으로 배치되어 담당하고 있음
- 로스앤젤레스시의 부시장은 집행조직의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조직을 거느리고 있지 않음

○ 소결

- 로스앤젤레스시의 부시장은 시장실에서 시장을 보좌·자문하는 정책 보좌진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실제 시 행정은 시장 직속의 각 부서 책임자가 담당하고 있음





## 2. 영국

### 1) 런던

#### ○ 시의 규모 및 기관구성의 유형

- 인구 : 8,308,369명(2012년)
- 면적 : 1,572km<sup>2</sup>
- 런던시는 직선 단체장과 내각형 집행부(a directly elected mayor and cabinet executive)의 형태로 단체장의 강한 리더십을 보장하고 있음
- 의원내각제 국가로 기본적으로는 기관통합형의 구조를 갖고 있으나, 직선단체장 선출 등 대립형의 요소도 있음

#### ○ 근거법령

- 런던광역시법(Greater London Authority Act) 1999, 2007
  - 부단체장의 위임권 행사: 제38조 (1999)
  - 부단체장의 권한 및 시장에 의한 임명권: 제49조 (1999)

#### □ 런던광역시법(Greater London Authority Act)

38. (1) Any function exercisable on behalf of the Authority by the Mayor shall also be exercisable on behalf of the Authority by any of the bodies or persons specified in subsection (2) below, if or to the extent that the Mayor so authorises, whether generally or specially, and subject to any conditions imposed by the Mayor.

(2) Those bodies and persons are—

- (a) the Deputy Mayor;
- (b) any member of staff of the Authority;
- (c) Transport for London;
- (d) the London Development Agency;
- (e) the Common Council;
- (f) any local authority.

38. (1) 시를 위해 시장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은 시장이 권한을 부여하는 정도에 따라, 그리고 시장이 규정한 조건에 따라 다음 (2)에 규정한 기관이나 인물에 의해서도 행사될 수 있다.

(2) 그 기관이나 인물은

- (a) 부시장
- (b) 시의 운영위원
- (c) 런던교통공사
- (d) 런던개발청
- (e) 시의회
- (d) 지방정부

The Deputy Mayor. 49. (1) There shall be a Deputy Mayor of London (“the Deputy Mayor”).

(2) The Deputy Mayor shall have such functions as may be conferred or imposed upon him by or under this Act or any other enactment, whenever passed or made.

(3) The Deputy Mayor shall be appointed by the Mayor from among the Assembly members.

(4) A person must not hold the offices of Deputy Mayor and Chair of the Assembly at the same time.

(5) If the Mayor appoints as Deputy Mayor the person who is the Chair of the Assembly, a vacancy shall arise in the office of Chair of the Assembly.

(6) Subsections (4) and (5) above apply in relation to the Deputy Chair of the Assembly as they apply in relation to the Chair of the Assembly.

(7) A person appointed Deputy Mayor shall not act in that office unless or until he has satisfied in respect of his office as an Assembly member the requirements of section 28(1) above.

(8) A person shall cease to be the Deputy Mayor if—

(a) he ceases to be an Assembly member;

(b) he at any time gives notice of resignation as the Deputy Mayor to the proper officer of the Authority; or

(c) the Mayor at any time gives him notice terminating his appointment as Deputy Mayor.

(9) A person who ceases to be Deputy Mayor shall be eligible for reappointment.

부시장. 49. (1) 런던 부시장을 둔다.

(2) 부시장은 이 법 혹은 제정 시기와는 상관없이 다른 법에 의해 규정되거나 부여된 기능들을 수행한다.

(3) 부시장은 의원 가운데 시장에 의해 임명된다.

(4) 부시장은 부시장 직과 의회 의장 직을 동시에 가질 수 없다.

(5) 시장이 의회 의장인 자를 부시장으로 임명하면, 의장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6) 의회 의장에 관해 적용되는 (4)항과 (5)항은 의회 부의장에게도 적용된다.

(7) 부시장으로 임명된 자는 의회 의원으로서 그 직에 관한 28조 (1)항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때까지는 그 직무를 행사할 수 없다.

(8) 부시장은 다음의 사유로 그 직이 중단될 수 있다.

- (a) 의회 의원직을 그만둘 때
  - (b) 부시장이 시에 사임의 의사를 표하였을 때
  - (c) 시장이 부시장에게 그 직의 해임을 통보했을 때
- (9) 부시장 직을 그만둔 사람도 부시장 직에 재임명 될 수 있다.

### ○ 부단체장 정수

- 런던광역시법(GLA act)에서는 부시장의 수에 대한 제한규정이 보이지 않음. 그러나 부시장 중에 1명은 대외적으로 시장을 대신하는 법정부시장(Statutory Deputy Mayor)으로 지정되어 있음
- 동법 제30조 시장의 권한 중에서 런던광역시법이 금지하고 있지 않은 규정(사무)과 관련해서는 시장의 권한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
- 동법 제67(1)조에서 시장이 임명할 수 있는 자유재량 임명직 수는 “10+2“임
- 따라서 런던광역시장의 임명권 재량에 의하여 임명직 부시장 수는 제한받지 않고 있음
- 현재 런던은 7명의 부시장을 두고 있음

### □ 런던광역시법(Greater London Authority Act)

30. (10) The functions conferred or imposed on the Authority under or by virtue of this section shall be functions of the Authority which are exercisable by the Mayor acting on behalf of the Authority.

30. (10) 이 조항에 의해 시에 부여되거나 규정된 기능은 시장이 시를 대신하여 행사할 수 있는 시의 기능이다.

67. (1) The Mayor may appoint

- (a) not more than two persons as his political advisers; and
- (b) not more than ten other members of staff.

(2) The Assembly, after consultation with the Mayor and taking into account, in particular,

- (a) the manner in which, and the extent to which, the Mayor has exercised, or proposes to

exercise, the powers conferred by subsection (1) above, and  
(b) any views of the Mayor as to the exercise of the Assembly's powers under this subsection, may appoint such staff as it considers necessary for the proper discharge of such functions of the Authority as are respectively exercisable by the Mayor, the Assembly, and the Mayor and Assembly acting jointly.  
(3) Any appointment under subsection (1) or (2) above is an appointment as an employee of the Authority.

67. (1) 시장은 다음과 같은 사람을 임명할 수 있다.  
(a) 2명 이하의 정치자문 위원  
(b) 10명 이하의 보좌진  
(2) 의회는 특히 다음의 사항에 대해 시장과 협의하고 검토하여야 한다.  
(a) 시장이 수행하는 직무 또는 제안된 직무에 대한 방법과 정도, 위 (1)항에 의해 부여된 권한  
(b) 이 규정 하에서 의회의 권한 수행에 관한 시장의 의견, 시장과 의회에 의해 개별적으로 임명되거나 혹은 공동으로 임명되어, 시의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보좌진  
(3) 위의 (1)항과 (2)항에 따라 임명된 상위 임명직들은 런던광역시의 지방공무원 지위를 갖는다.

○ 부단체장 명칭

- 부시장의 명칭은 모두 'Deputy Mayor'로 칭함

○ 부단체장 임명방식

- 런던광역시장의 런던광역시의회 의원 중에서 임명하고, 그 직위에 대해서도 시장이 결정, 공고하여 임명 (GLA act 제49조)
- 동법 제67조(부시장 임명과 관련된 조사):
  - (1) 시장은 임명할 수 있다...(a) 2명 이하의 정치자문위원(political advisers)을 둘 수 있다 (b) 10명 이하의 보좌진(members of staff)을 둘 수 있다.
  - (2) 시장이 자유재량으로 임명한 상위 임명직들은 런던광역시의 지방공무원 지위를 갖는다.

## ○ 부단체장 업무와 권한

- 런던시의 부시장은 시장실(Mayor's Office)에서 소관분야 별로 시장의 정책에 자문하고 시장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① 법정 부시장(Statutory Deputy Mayor)

- 대외적으로 시장을 대신하는 부시장의 역할
- 런던 치안위원회와 교통위원회 위원

## ② 주택·토지자산 부시장(Deputy Mayor for Housing, Land and Property)

- 주택정책의 개발과 운영
- 런던의 토지와 자산의 활용전략 수립
- 에너지 효율성 프로그램 관리

## ③ 교통 부시장(Deputy Mayor for Transport)

- 교통 문제에 대한 정책조언과 의사결정
- 런던과 도시철도회사(TfL) 간 관계 감독, 교통시스템 개선

## ④ 치안 부시장(Deputy Mayor for Policing and Crime)

- 시장실의 치안국의 책임자로 런던의 치안정책을 수립하고 집행

## ⑤ 정책기획 부시장(Deputy Mayor for Policy and Planning)

- 시장실의 참모장(Chief of Staff)
- 최상위 수준의 정책과 전략, 예산안에 대해 시장에게 조언
- 시장의 대변인 역할, 외부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

## ⑥ 산업 부시장(Deputy Mayor for Business and Enterprise)

- 산업 부분의 정책과 전략, 집행 등에 대한 조언
- 환경, 건강, 기획 위원회 위원

## ⑦ 교육·문화 부시장(Deputy Mayor for Education and Culture)

- 시장의 교육과 문화부문 정책수립과 집행에 조언
-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 창구 역할

○ 부단체장 신분과 임기

- 부시장들의 신분은 런던광역시법 제49조 규정과 같이 기본적으로 런던광역시 의회 의원 신분임
  - 법정 부시장인 Victoria Borwick은 사업가 출신으로 2008년부터 런던 의회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음
  - 주택·토지자산 부시장인 Richard Blakeway은 하원의원 출신으로 소말리아, 우크라이나 정부에 자문역할을 하였음
  - 교통 부시장인 Isabel Dedring은 맥킨지 등 컨설팅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런던도시철도회사에서 5년 간 근무하였음
  - 치안 부시장인 Stephen Greenhalgh는 2006~2012년까지 Hammersmith & Fulham 의회의 리더로서 범죄를 크게 감소시킨 정치인임
  - 정책기획 부시장인 Edward Lister는 1992~2011까지 Wandsworth 의회의 리더로서 활약한 정치인임
  - 산업 부시장인 Kit Malthouse는 Westminster시 의원을 거쳐 2008년부터 런던의회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음
  - 교육·문화 부시장인 Munira Mirza는 왕립예술협회(Royal Society of Arts)를 비롯한 다수의 문화예술단체에서 근무하였음
- 정해진 임기는 없고 정치적 결정에 따르며, 각 부시장들의 임명시점과 근무기간도 모두 다름

○ 부단체장의 보수 수준

- 부시장들의 연봉은 경력에 따라 다르게 책정됨
  - 법정 부시장인 Victoria Borwick의 연봉은 £97,000(한화 약 1억6천8백만원) 수준임
  - 주택·토지자산 부시장인 Richard Blakeway, 교통 부시장 Isabel Dedring, 산업 부시장 Kit Malthouse, 교육·문화 부시장 Munira Mirza의 연봉은 모두 £129,000(한화 약 2억2천4백만원) 수준임
  - 치안 부시장인 Stephen Greenhalgh의 연봉은 £127,000(한화 약 2억2

천만원) 수준임

- 정책기획 부시장인 Edward Lister의 연봉은 £150,000(한화 약 2억6천만원)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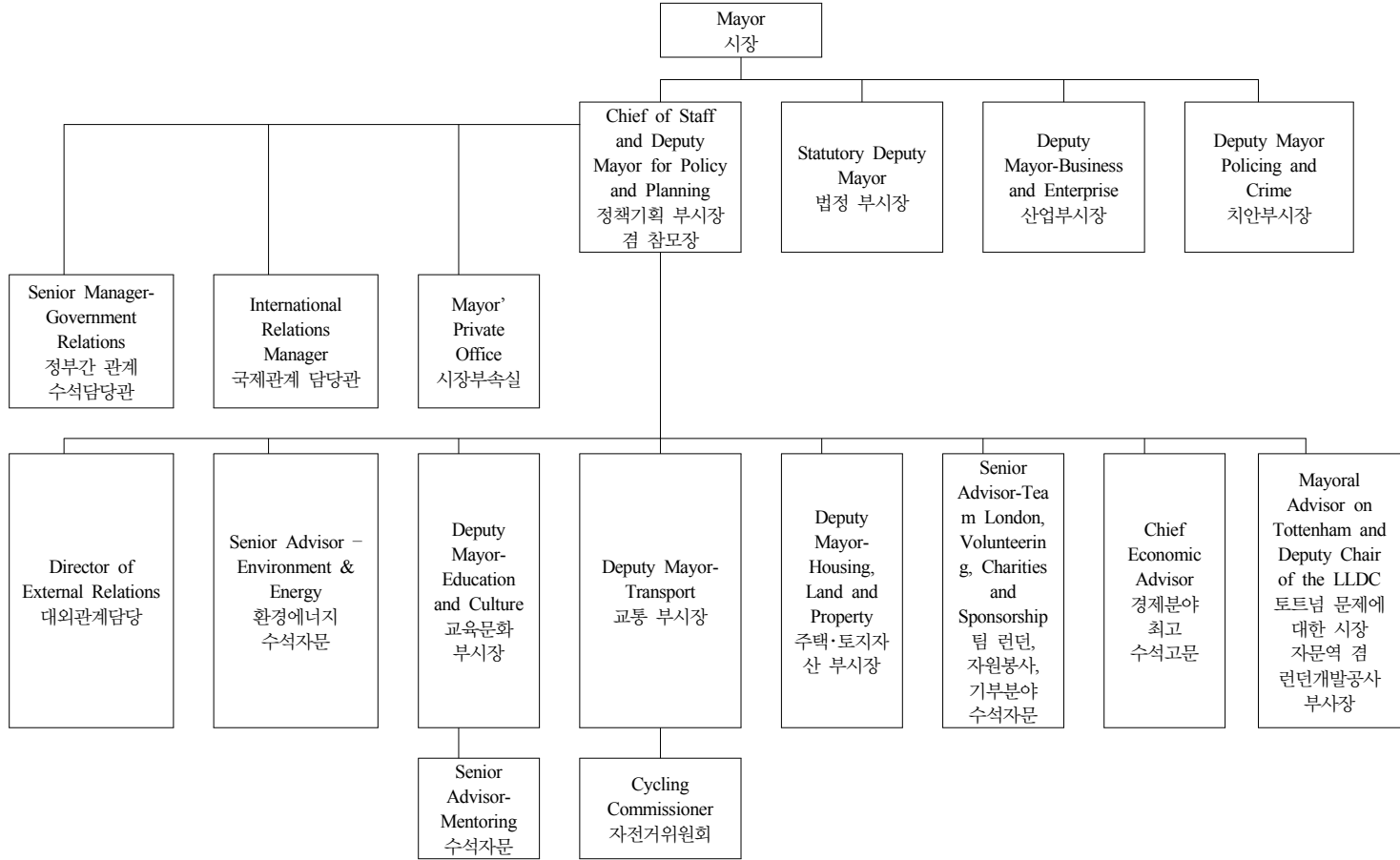
○ 런던시 조직도

- 다음 장의 조직도에서 보듯이 런던시의 시장실에는 총 7명의 부시장과 전문 자문역 등이 배치되어 시의 기본 운영방향과 정책을 책임지고 있음
- 시의 집행조직은 수석행정관의 책임 아래 지역공동체·지식정보실, 지역개발·기업·환경실, 주택·토지실, 자원실, 총무실 등 5개의 주요 부서를 중심으로 그 아래 세부적인 운영부서가 배치되어 수행하고 있음

○ 소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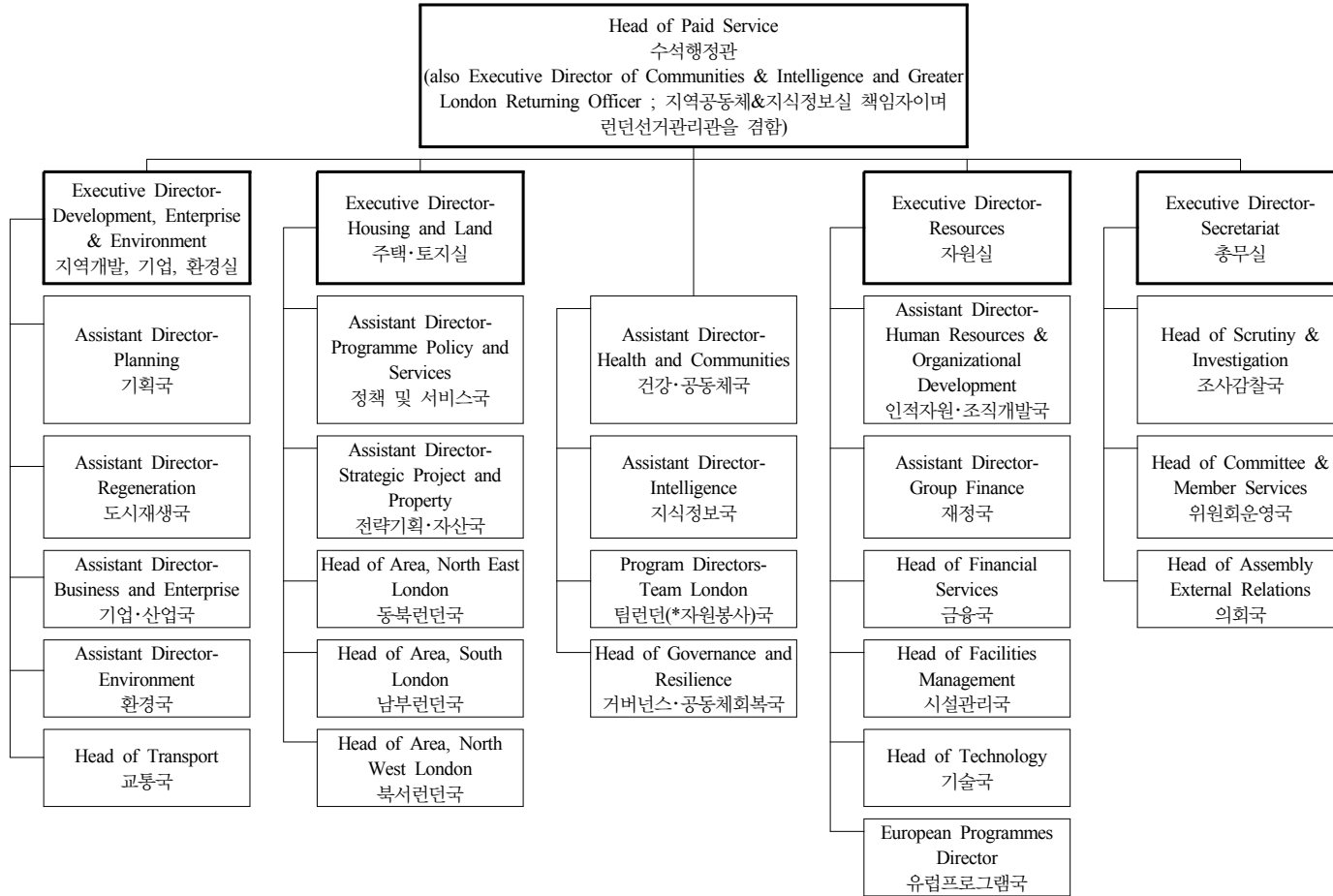
- 런던시의 부시장은 시장실에서 시장을 보좌·자문하는 정책 보좌진의 역할에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음
- 실제 시 행정은 수석행정관과 고위공무원들의 책임 하에 수행되고 있음

① 시장실





② 수석관리팀



## 2) 레스터(Leicester)

### ○ 시의 규모 및 기관구성의 유형

- 인구 : 329,600명(2011년)
- 면적 : 73.32km<sup>2</sup>
- 레스터시는 직선 단체장과 내각형 집행부(a directly elected mayor and cabinet executive)의 형태로 단체장의 강한 리더십을 보장하고 있음
- 의원내각제 국가로 기본적으로는 기관통합형의 구조를 갖고 있으나, 직선단체장 선출 등 대립형의 요소도 있음

### ○ 근거법령

- Local Government Act 2000
- Leicester City Council Constitution

#### Local Government Act 2000

##### Part2.

11.—(1) The executive of a local authority must take one of the forms specified in subsections (2) to (5).

(2) It may consist of—

- (a) an elected mayor of the authority, and
  - (b) two or more councillors of the authority appointed to the executive by the elected mayor.
- Such an executive is referred to in this Part as a mayor and cabinet executive.

(3) It may consist of—

- (a) a councillor of the authority (referred to in this Part as the executive leader) elected as leader of the executive by the authority, and
- (b) two or more councillors of the authority appointed to the executive by one of the following—
  - (i) the executive leader, or
  - (ii) the authority.

Such an executive is referred to in this Part as a leader and cabinet executive.

(4) It may consist of—

- (a) an elected mayor of the authority, and
- (b) an officer of the authority (referred to in this Part as the council manager) appointed to the executive by the authority. Such an executive is referred to in this Part as a mayor and

council manager executive.

(5) It may take any such form as may be prescribed in regulations made by the Secretary of State.

(8) The number of members of a mayor and cabinet executive or a leader and cabinet executive may not exceed 10.

2편

11. (1) 지방정부의 집행부는 (2)에서 (5)항까지에 규정된 형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2) 지방정부는

(a) 직선 시장과

(b) 직선 시장에 의해 집행부에 임명된 2명 이상의 의원들로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집행부를 여기서는 ‘직선시장-내각형’이라고 칭한다.

(3) 지방정부는

(a) 지방정부의 리더로 선출된 의원(내각지도자)과

(b) (i) 내각 지도자 혹은 (ii) 시정부 중에 내각에 임명된 두 명 이상의 의원들로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집행부를 여기서는 ‘내각지도자-내각형’이라고 칭한다.

(4) 지방정부는

(a) 직선 시장과

(b) 지방정부에 의해 집행부에 임명된 지방정부의 관리(여기서는 지배인으로 칭함)로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집행부를 여기서는 ‘직선시장-지배인형’이라고 칭한다.

(5) 지방정부는 장관에 의해 사전에 규정된 것이라면 어떤 형태든 취할 수 있다.

(8) 시장-내각형 또는 내각지도자-내각형에서 구성원의 수는 10명을 넘을 수 없다.

#### SCHEDULE 1.

##### Mayor and cabinet executives

1.—(1) This paragraph applies in relation to executive arrangements by a local authority which provide for a mayor and cabinet executive.

(2) Subject to section 11(8), the executive arrangements must include provision which enables the elected mayor to determine the number of councillors who may be appointed to the executive under section 11(2)(b).

(3) The executive arrangements must include provision which requires the elected mayor to appoint one of the members of the executive to be his deputy(referred to in this paragraph as the deputy mayor).

(4) Subject to sub-paragraph (5), the deputy mayor, unless he resigns as deputy mayor or ceases to be a member of the authority, is to hold office until the end of the term of office

of the elected mayor.

(5) The elected mayor may, if he thinks fit, remove the deputy mayor from office.

(6) Where a vacancy occurs in the office of deputy mayor, the elected mayor must appoint another person in his place.

(7) If for any reason the elected mayor is unable to act or the office of elected mayor is vacant, the deputy mayor must act in his place.

(8) If for any reason—

(a) the elected mayor is unable to act or the office of elected mayor is vacant, and

(b) the deputy mayor is unable to act or the office of deputy mayor is vacant, the executive must act in the elected mayor's place or must arrange for a member of the executive to act in his place.

별표 1.

직선시장과 내각

1. (1) 이 단락은 직선시장-내각형을 구성하는 지방정부의 내각 설치와 관련하여 적용된다.

(2) 11조(8)에 따라 집행부 구성에는 직선시장이 11(2)(b)에 따라 내각에 임명되는 의원의 수를 결정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집행부 구성은 시장이 내각 구성원의 한 명을 부단체장(이 단락에서는 부시장으로 칭함)에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4) (5)항에 따라 부시장이 부시장 직을 사임하거나 내각위원을 그만두지 않는 한 부시장은 직선시장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그 임기를 유지한다.

(5) 직선시장은 적절하다고 생각하면, 부시장을 그 직에서 해임할 수 있다.

(6) 부시장이 궐위되는 경우, 직선시장은 그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을 임명하여야 한다.

(7) 만일 어떤 이유에서건 직선시장이 그 직을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경우 부시장은 시장을 대신하여 그 직을 수행해야 한다.

(8) 만일 어떤 이유에서건

(a) 직선시장이 그 직을 수행할 수 없거나, 직선시장이 궐위된 경우, 그리고

(b) 부시장이 그 직을 수행할 수 없거나, 부시장이 궐위된 경우

내각은 직선시장을 대신하거나 그 직을 대신할 수 있는 내각 구성원을 정해야 한다.

Leicester City Council Constitution

Part One – Introduction to the Council Constitution

2) How the Council works

The City Mayor appoints a Deputy City Mayor and between one and eight Assistant City Mayors from the 54 Councillors, to work with him. Together they are described in this Constitution as the Executive. Individual job descriptions set

out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City Mayor, Deputy City Mayor and Assistant City Mayors. These job descriptions are published on the City Mayor's Internet pages.

시장은 54명의 시의원 가운데서 자신과 함께 일할 부시장과 1명에서 8명의 보조시장을 임명한다. 이들은 모두 이 현장에서 규정하는 내각이다. 개별적인 업무내용은 시장, 부시장, 보조시장의 역할과 책임에서 규정한다. 이 업무내용은 시장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 Part Two

#### Article 5 – The City Mayor and the Executive

##### 5.01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City Mayor

In exercising this role the City Mayor will:

- i. In accordance with the Local Government Act 2000, appoint between two and nine serving Councillors, one of whom must be appointed as the Deputy City Mayor with the others known as Assistant City Mayors, to the Executive including:
  - o Appointing to and removing from the Deputy City Mayor position; and
  - o Appointing to and removing from the position of Assistant City Mayor.

#### 5조 – 시장과 집행부

##### 5.01 시장의 역할과 책임

시장은 지방정부법(2000)에 따라 2명에서 9명까지의 의원들을 지명하고, 이 가운데 한 명을 부시장으로, 나머지는 보조시장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집행부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 o 부시장의 임명과 해임
- o 보조시장의 임명과 해임

##### 5.03 Appointment of Deputy City Mayor and Assistant City Mayors

The Deputy City Mayor and Assistant City Mayors will be Councillors appointed to that position by the City Mayor.

The City Mayor may replace Assistant City Mayors and the Deputy City Mayor at any time but otherwise the Deputy City Mayor shall remain in post for the duration of the City Mayor's term of office unless:

The Deputy City Mayor shall have authority to exercise the City Mayor's powers only in the event that the City Mayor is unable to act at any time. If at any time the City Mayor is unable to act or if the office of City Mayor is vacant, the Deputy City Mayor shall act in his or her place.

##### 5.03 부시장과 보조시장의 임명

부시장과 보조시장은 시의원이며 시장에 의해 임명된다.

시장은 부시장과 보조시장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지만, 교체되는 부시장의 임기는 시장의 공식임기 동안만 유지된다.  
부시장은 시장이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만 시장의 권한을 행사 할 수 있다. 만일 시장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거나 궐위 상태일 경우에는 부시장은 언제든지 시장을 대신할 수 있다.

- 부단체장 정수
  - 지방정부법과 레스터시 주 헌장에 의해 1명의 부시장을 두고 있음
- 부단체장 명칭
  - 부시장의 명칭은 ‘Deputy City Mayor’로 칭함
  - (※ 시의 의전 기능을 수행하는 상징적인 직위로 의회에 Lord Mayor와 Deputy Lord Mayor를 별도로 두고 있음)
- 부단체장 임명방식
  - 시장은 2-9명의 의원을 시 내각에 지명하고, 그 가운데 한 명을 부시장으로 임명함
  - 부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집행부 의원은 Assistant City Mayor(보조시장)가 됨
  - 현재 6명의 Assistant City Mayor가 있음
- 부단체장 업무와 권한
  - 부시장인 Rory Palmer는 내각의 공공보건 분야를 담당하고 있으며, 시의 보건건강 위원회의 의장을 겸하고 있음
  - 부시장은 시장이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우선적으로 시장의 직무를 대행함
- 부단체장 신분과 임기
  - 현 부시장인 Rory Palmer 레스터시의 의원이며, 임기는 시장의 임기와 같은 4년임
  - 그러나 부시장은 시장에 의해 언제든지 교체될 수 있으며, 그 경우 새

로운 부시장은 시장의 임기 동안만 그 직을 유지함

○ 부단체장의 보수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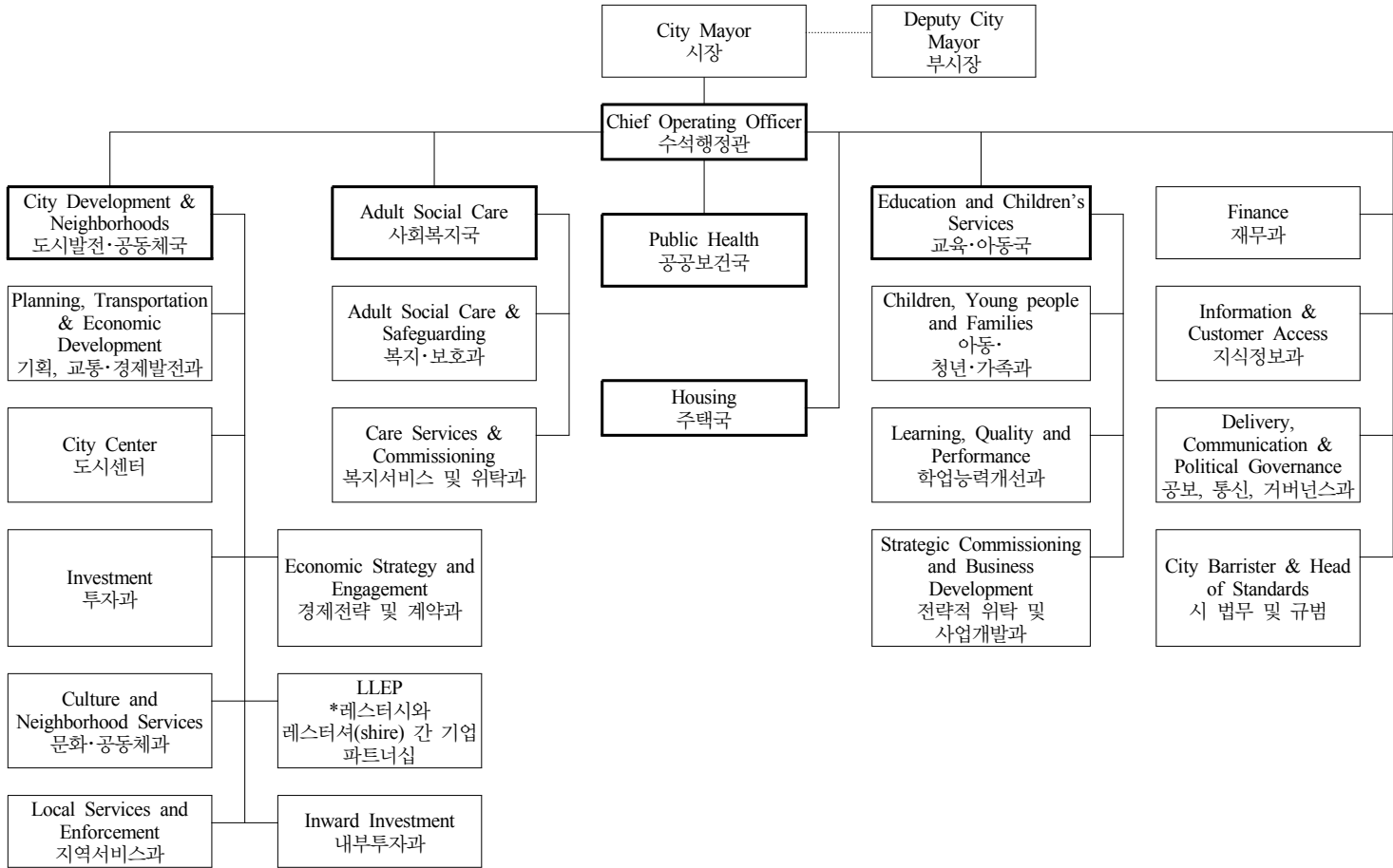
- Leicester City Council Constitution 부록에 규정되어 있음, 기본적으로 선출된 의원의 자격으로 연 £9,829(한화 약 1,681만원)를 받음
- 여기에 직무에 따른 특별급이 부가 되는데, 부시장은 연 £39,474.50(한화 약 6,751만원)임(참고로 시장의 연봉은 £55,909, 한화로 약 9,562만원임).

○ 레스터시 조직도

- 다음 장의 조직도를 보면 레스터시의 행정은 시장에게 책임을 지는 수석행정관이 도시발전·공동체국, 사회복지국, 공공보건국, 주택국, 교육·아동국 등의 주요 부서를 관할하여 운영하고 있음
- 레스터시의 부시장은 6명의 Assistant City Mayor와 내각(Council)을 구성하고 있으며, 집행조직을 직접 관할하지 않음

○ 소결

- 레스터시의 부시장은 시장실에서 시장을 보좌·자문하는 정책 보좌진의 역할에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음
- 실제 시 행정은 수석행정관과 고위공무원들의 책임 하에 수행되고 있음





## 제2절 유럽 국가

### 1. 프랑스

#### 1) 파리

##### ○ 시의 규모 및 기관구성의 유형

- 인구 : 2,201,578명(2011년)
- 면적 : 105.4km<sup>2</sup>
- 프랑스의 지방정부는 지방의회의 의원 중에서 의장 겸 단체장으로 간선되는 의회-단체장 통합형을 취하고 있음
- 단체장은 그 지역 선거에서 정당의 후보자명부 1번으로서, 선거결과 다수당의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 지방의회 첫 회기에서 의원간선으로 선출됨

##### ○ 근거법령

- 통합지방자치법전(CGCT : Code général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 □ 프랑스 통합지방자치법전(CGCT : Code général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Article L2122-2 En savoir plus sur cet article...

Créé par Loi 96-142 1996-02-21 jorf 24 février 1996

Le conseil municipal détermine le nombre des adjoints au maire sans que ce nombre puisse excéder 30 % de l'effectif légal du conseil municipal.

통합지방자치법전 제L2122-2조

지방자치단체의회는 해당 의회의 법정 인원수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시장(adjoints au maire)의 수를 결정한다.

Article L2122-2-1 En savoir plus sur cet article...

Créé par Loi n°2002-276 du 27 février 2002 - art. 3

Dans les communes de 80,000 habitants et plus, la limite fixée à l'article L. 2122-2 peut donner lieu à dépassement en vue de la création de postes d'adjoints chargés principalement d'un ou plusieurs quartiers, sans toutefois que le nombre de ceux-ci puisse excéder 10 % de l'effectif légal du conseil municipal.

통합지방자치법전 제L2122-2-1조

주민수가 8만 및 그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는, 동법전 제L. 2122-2조에서 정하고 있는 부시장수의 제한 범위를 초과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주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구역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시장직을 창설할 목적에 대해서만 허용되며, 그 허용범위(수)는 해당의회의 법정 인원수의 10%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 부단체장 정수

- 부단체장 정수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30% 이하임(통합지방자치법전 제L2122-2조)
- 인구 8만명 이상의 지방정부에서는 이외에도 ‘구역위원회’<sup>1)</sup>를 담당하는 부단체장을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수는 지방의원 총수의 10%를 넘지 말아야 함(통합지방자치법전, 제L2122-2-1조)
- 부단체장의 정수는 지방의회 총회에서 결정함. 파리시의 경우, 각 정당을 대표하는 지방의원들 중에서 사전에 지명되는 것이 정치적 기본 노선이고, 이에 근거해서 파리시의회는 부단체장의 수를 의결하여 투표로 선출하였음
- 2014년 선출된 총 파리시 의원은 163명이고, 의회-시장 통합형 지방정부 구성 원칙에 따라 다수당의 대표지방의원 중에서 간선으로 선출된, Anne Hidalgo와 21명의 부시장(Adjointe au Maire de Paris)으로 파리시 의회와 정부를 구성하고 있음

○ 부단체장 명칭

- 부단체장은 ‘파리 부시장(Les adjoints au maire de Paris)’으로 칭함

1) 구역위원회는 자치구의 여러 구역별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의의 성격을 갖는 위원회임. 구역위원회의 명칭, 인력구성, 기능 등은 지방의회가 결정함. 각 구역위원회는 시장에게 의견제시를 할 수 있고, 구역 도는 자치단체 관할지역 전체에 관련되는 문제는 무엇이든지 시장에게 의견제시를 할 수 있음. 시장은 구역위원회로 하여금 구역과 관련된 행정활동의 내용을 수립·실행·평가하는 작업에 협력하도록 할 수 있으며 특히 도시발전정책 등과 같은 시책들에 대해서 협력요청을 할 수 있음 (행정자치부·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2. 「선진지방자치제도: 프랑스」. p.272.)

## ○ 부단체장 임명방식

- 2008년 선거부터 남녀동수 대표원칙(principe de la parité)에 따라서 (통합자치법전 제L2122-7-2조) 부시장 후보자 의원들에 대한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절대다수 득표자를 부시장으로 선출함(통합자치법제 제L2122-7-2조를 개정한 2013년 5월 17일 법률 제29조)
- 파리, 마르세유, 리옹 등은 자치구 의회 의장이 구청장이면서 동시에 당연직 부시장을 겸하고 있음. 따라서 파리는 20명의 구청장이 부시장을 겸하고 있음

## □ 프랑스 통합지방자치법전(CGCT : Code général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 Article L2122-7-2

Modifié par LOI n°2013-403 du 17 mai 2013 - art. 29

Dans les communes de 1,000 habitants et plus, les adjoints sont élus au scrutin de liste à la majorité absolue, sans panachage ni vote préférentiel. Sur chacune des listes, l'écart entre le nombre des candidats de chaque sexe ne peut être supérieur à un.

Si, après deux tours de scrutin, aucune liste n'a obtenu la majorité absolue, il est procédé à un troisième tour de scrutin et l'élection a lieu à la majorité relative. En cas d'égalité de suffrages, les candidats de la liste ayant la moyenne d'âge la plus élevée sont élus.

En cas d'élection d'un seul adjoint, celui-ci est élu selon les règles prévues à l'article L. 2122-7.

## 통합지방자치법전 제L2122-7-2조

주민수가 1천명 및 그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은 혼합명부 또는 선호명부가 아닌, (통합) 선거인명부 중에서 절대다수 득표를 한 경우에 선출된다. 각 당의 선거인명부의 경우, 남녀 부시장 후보자 수는 1명 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된다.

만일, 제2차 투표 후, 어떤 후보명부도 절대다수 득표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 3차 투표를 실시하게 되며, 이 경우에는 (단순) 다수득표로 결정한다. 득표수가 동일할 경우 후보자들 중에서 평균연령이 높은 후보자명부가 부시장으로 선출된 것으로 한다.

단 한 명의 부시장을 선출할 경우에는 통합지방자치법전 제L. 2122-7조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른다.

## ○ 부단체장 업무와 권한

- 시장은 부시장들에게 시장의 권한들을 위임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로

부터 위임받은 업무들도 이에 해당함. 지방정부의 자율과 책임에 관한 법률(La loi du 13 août 2004 relative aux libertés et responsabilités locales)에 근거하여 재위임 가능

- 이 경우 위임권한을 받은 부시장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재정권 수임 부시장(le maire adjoint délégué aux finances)’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됨
- 부시장은 파리시 행정업무 중 도시개발, 건축, 지역발전, 환경, 기후변화, 교통, 재정, 안전, 주택, 문화, 사회복지 등에 대한 개별적인 행정권을 위임받아 행정책임을 행사하면서 파리시장의 시 업무를 보좌함
-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은 주로 각 국(Direction)의 업무에 따라서 부시장의 업무(기능)를 분담하고 있으며, 21명의 부시장 업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음

부시장	업무 및 권한
Bruno Julliard	제1부시장으로 자치구와 문화유산, 문화기업 등 문화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와 파리 교육협의위원회 상임위원을 겸하고 있음
Julien Bargeton	공공조달 및 금융정책을 책임지고 있으며, 파리 교육협의위원회 상임위원을 겸하고 있음
CéLia Baluel	파리 환경문제와 지속가능한 개발, 영토·에너지·기후 기획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Hélène Bidard	양성 평등과 인권문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Ian Brossat	파리의 주택정책과 긴급 주거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담당하고 있으며, 파리 교육협의위원회 상임위원을 겸하고 있음
Colombe Brossel	자연과 생물, 보건 예방 문제를 담당하고 있으며, 파리 교육협의위원회 상임위원을 겸하고 있음
Alexandra Cordebard	파리시의 교육과 학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당하고 있음
Pénélope Komitès	공원, 장례사업, 생물다양성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Emmanuel Gregoire	인적자원관리, 행정서비스와 관리의 현대화 사업을 담당하고 있음
Antoinette Guhl	사회적 경제 정책의 모든 사항을 책임지고 있음
Bernard Jomier	파리의 병원과 공공의료, 장애인 지원 등을 책임지고 있으며, 파리시의 교육협의위원회 상임위원을 겸하고 있음
Patrick Klugman	국제관계와 프랑수어권 지원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담당하고 있음
Marie-Christine Lemardeley	대학 등 고등교육과 학생 생활, 연구지원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담당하고 있음
Jean-Francois Martins	스포츠와 관광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음

부시장	업무 및 권한
Jean-Louis Missika	도시계획과 건축, 파리의 경제발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음
Christophe Najdovski	운송 및 도로, 여행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Mao Peninou	파리의 위생문제에 대한 모든 사항을 담당하고 있으며, 파리시의 교육협의위원회 상임위원을 겸하고 있음
Olivia Polski	파리시의 무역과 직업에 관련한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Pauline Veron	지역민주주의, 시민참여, 청소년, 고용에 관한 문제를 책임지고 있으며, 파리시의 교육협의위원회 상임위원을 겸하고 있음
Dominique Versini	가정, 유아 및 아동보호, 노인에 관련된 업무를 모두 총괄하고 있으며, 파리시의 교육협의위원회 상임위원을 겸하고 있음
Catherine Vieu-Charier	전쟁과 파리 시민들의 투쟁의 역사를 기록하는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 재수임 지방의원

- 파리시의 경우 부단체장 중에서 부단체장이 부여받은 위임권한의 범위 내에서 다시 재위임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위임권을 받은 ‘부시장 위임권을 수임받은 위원’(Conseillers délégués)들이 6명 더 있음
- 이들의 재위임권의 분야를 보면, 제1부시장으로부터 ‘문화사업 및 야간활동업무’ 분야의 사무를 위임받고 있는 지방의원 2명, 도시개발 담당 부시장으로부터 ‘그랑파리 대도시 프로젝트 및 건축’ 분야의 수임위원 1명, 사회복지 담당 부시장으로부터 ‘유아·어린이 보호’ 분야의 수임위원 1명, 해외영토총국 담당 부시장으로부터 ‘유럽연합’ 분야의 수임위원 1명, 녹지환경국 담당 부시장으로부터 ‘녹지·바이오·장례’ 분야의 수임위원 1명 등 총 6명의 지방의원도 함께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시장을 지원하고 있음

### ○ 부단체장 신분과 임기

- 파리시 부시장은 모두 지방의원이며, 이들은 부시장으로서 고정된 임기는 없고 정치적 판단에 따름

### ○ 부단체장의 보수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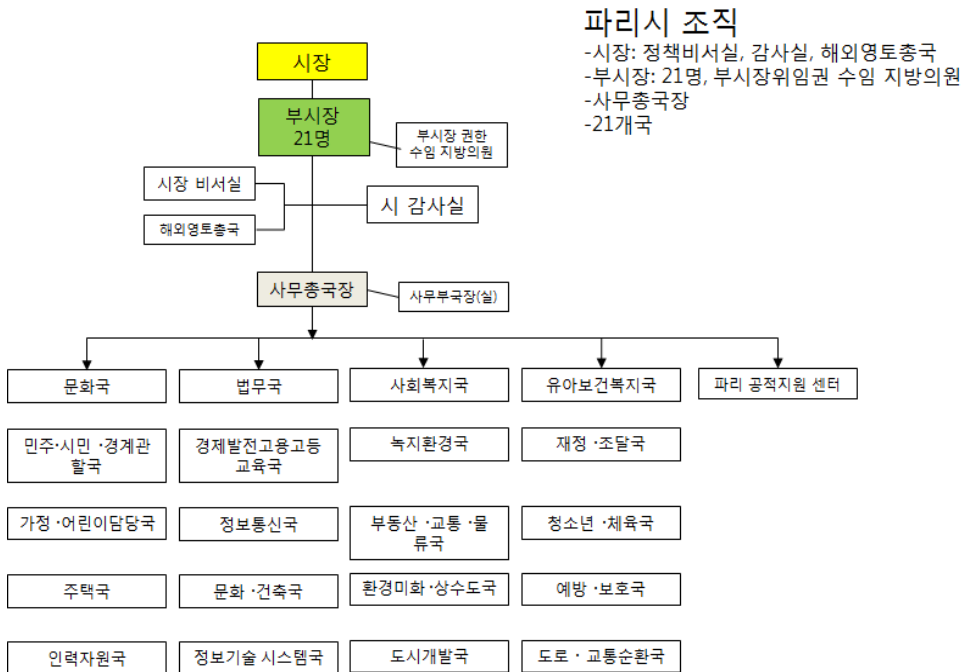
- 시장과 부시장의 보수는 통합지방자치법전(CGCT) 제L.2123-23조에

의하면, “공무원 보수표에 근거하여 주민 수 규모에 따라서 기본보수가 결정됨

- 인구 10만 명 이상의 지방정부는 월별 시장 €5,512.13(한화 약 768만원), 부시장 €2,508.97(한화 약 346만원)임
  - 인구 5만~9만9천999명의 지방정부는 월별 시장 €4,181.62(한화 약 578만원),부시장 €1,672.65(한화 약 231만원)임
  - 인구 2만~4만9천999명의 지방정부는 월별 시장 €3,421.32(한화 약 473만원), 부시장 €1,254.48(한화 약 173만원)임
- 따라서 부시장직만을 수행하는데 따른 연봉은 약 €30,107(한화 약 4천128만원) 수준임

○ 파리시 조직도

- 행정실무는 시장과 부시장의 지휘를 받는 사무총국장이 총괄하고 있으며, 부시장은 각자 21개의 국을 나누어 관할하고 있음



## ○ 소결

- 파리시의 부시장은 모두 지방의원이며, 시장으로부터 21개 국에 대한 사무권을 위임받아 소관 업무의 최종적인 정치적 책임자로서 기능하고 있음

## 2) 마르세유

## ○ 시의 규모 및 기관구성의 유형

- 인구 : 850,636명(2011년)
- 면적 : 240.62km<sup>2</sup>
- 마르세유시 역시 파리와 마찬가지로 지방의회 의원 중에서 의장 겸 단체장으로 간선되는 의회-단체장 통합형을 취하고 있으며, 단체장은 그 지역 선거에서 정당의 후보자명부 1번으로서, 선거결과 다수당의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 지방의회 첫 회기에서 의원간선으로 선출됨

## ○ 근거법령

- 통합지방자치법전(CGCT : Code général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 프랑스 통합지방자치법전(CGCT : Code général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Article L2122-2 En savoir plus sur cet article...

Créé par Loi 96-142 1996-02-21 jorf 24 février 1996

Le conseil municipal détermine le nombre des adjoints au maire sans que ce nombre puisse excéder 30 % de l'effectif légal du conseil municipal.

통합지방자치법전 제L2122-2조

지방자치단체의회는 해당회의의 법정 인원수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시장(adjoints au maire)의 수를 결정한다.

Article L2122-2-1 En savoir plus sur cet article...

Créé par Loi n°2002-276 du 27 février 2002 - art. 3

Dans les communes de 80,000 habitants et plus, la limite fixée à l'article L. 2122-2 peut donner lieu à dépassement en vue de la création de postes d'adjoints chargés principalement d'un ou plusieurs quartiers, sans toutefois que le nombre de ceux-ci puisse excéder 10 % de

l'effectif légal du conseil municipal.

통합지방자치법전 제L2122-2-1조

주민수가 8만 및 그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동법전 제L. 2122-2조에서 정하고 있는 부시장 수의 제한 범위를 초과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주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구역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시장직을 창설할 목적에 대해서만 허용되며, 그 허용범위(수)는 해당회의의 법정 인원수의 10%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 부단체장 정수

- 부단체장 정수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30% 이하임(통합지방자치법전 제L2122-2조)
- 인구 8만명 이상의 지방정부에서는 이외에도 ‘구역위원회’<sup>2)</sup>를 담당하는 부단체장을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수는 지방의원 총수의 10%를 넘지 말아야 함(통합지방자치법전, 제L2122-2-1조)
- 마르세유 지방의회는 총 101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30명의 부단체장과 12명의 ‘시장권한을 수입 받은 의원’(conseillers municipaux délégués)이 실질적으로 집행부를 총괄지휘 하는 운영체를 구성하고 있음

○ 부단체장 명칭

- 부단체장은 ‘마르세유 부시장(Les adjoints au maire de Marseille)’으로 칭함

○ 부단체장 임명방식

- 2008년 선거부터 남녀동수 대표원칙(principe de la parité)에 따라서(통합자치법전 제L2122-7-2조) 부시장 후보자 의원들에 대한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절대다수 득표자를 부시장으로 선출함(통합자치법제 제L2122-7-2조를 개정한 2013년 5월 17일 법률 제29조)
- 파리, 마르세유, 리옹 등은 자치구 의회 의장이 구청장이면서 동시에 당연직 부시장을 겸하고 있음. 따라서 마르세유시는 16명의 구청장이 당연직으로 부시장을 겸하고 있음

2) 파리지 설명 편 참조.



□ 프랑스 통합지방자치법전(CGCT : Code général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Article L2122-7-2

Modifié par LOI n°2013-403 du 17 mai 2013 - art. 29

Dans les communes de 1,000 habitants et plus, les adjoints sont élus au scrutin de liste à la majorité absolue, sans panachage ni vote préférentiel. Sur chacune des listes, l'écart entre le nombre des candidats de chaque sexe ne peut être supérieur à un.

Si, après deux tours de scrutin, aucune liste n'a obtenu la majorité absolue, il est procédé à un troisième tour de scrutin et l'élection a lieu à la majorité relative. En cas d'égalité de suffrages, les candidats de la liste ayant la moyenne d'âge la plus élevée sont élus.

En cas d'élection d'un seul adjoint, celui-ci est élu selon les règles prévues à l'article L. 2122-7.

통합지방자치법전 제L2122-7-2조

주민수가 1천명 및 그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은 혼합명부 또는 선호명부가 아닌, (통합) 선거인명부 중에서 절대다수 득표를 한 경우에 선출된다. 각 당의 선거인명부의 경우, 남녀 부시장 후보자 수는 1명 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된다.

만일, 제2차 투표 후, 어떤 후보명부도 절대다수 득표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 3차 투표를 실시하게 되며, 이 경우에는 (단순) 다수득표로 결정한다. 득표수가 동일할 경우 후보자들 중에서 평균연령이 높은 후보자명부가 부시장으로 선출된 것으로 한다.

단 한 명의 부시장을 선출할 경우에는 통합지방자치법전 제L. 2122-7조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른다.

### ○ 부단체장 업무와 권한

- 시장은 부시장들에게 시장의 권한들을 위임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들도 이에 해당함. 지방정부의 자율과 책임에 관한 법률(La loi du 13 août 2004 relative aux libertés et responsabilités locales)에 근거하여 재위임 가능
-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은 주로 각 국(Direction)의 업무에 따라서 부시장의 업무(기능)를 분담하고 있으며, 30명의 부시장 업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음

부시장	업무 및 권한
Dominique Tian	제1부시장이며, 시의 고용정책과 여행 및 운송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Martine Vassal	시의 국제 및 유럽관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Roland Blum	시의 금융과 예산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Solange Biaggi	시의 전시와 공예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Robert Assante	시의 환경문제와 지속가능한 개발, 기후계획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Laure-Agnès Caradec	시의 토지와 문화유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Jean Roatta	시의 유료-지중해 협력 사업을 담당하고 있음
Monique Cordier	시의 자연지역 보호와 공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Didier Parakian	시의 경제사업과 국제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Arlette Fructus	시의 주택과 도시재생 정책을 담당하고 있음
Richard Miron	시의 스포츠 관련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Dominique Vlasto	시의 관광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Daniel Sperling	시의 디지털과 혁신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Danièle Casanova	시의 보육과 초등학교 교육을 담당하고 있음
Maurice Di Nocera	도시의 주요 이벤트 시설 관리를 담당하고 있음
Anne Marie	시의 문화 활동과 박물관, 예술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음
Michel Dary	시의 시민서비스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Marie-Louise Lota	시의 공공 위치정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Patrick Padovani	시의 위생과 건강 문제를 담당하고 있음
Caroline Pozmentier	시의 공공안전과 범죄 예방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Julien Ruas	시의 화재예방과 도시 위험관리를 담당하고 있음
Nora Preziosi	시의 지역청소년과 여성의 권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Didier Reault	시의 해양과 해변관리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Catherine Chantelot	시의 유아 및 유아원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Gérard Chenoz	마르세유 도시프로젝트 Grands Projets d'Attractivité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Sylvie Carrega	시의 사회센터 및 공공주택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Xavier Mery	시의 통합과 차별철폐, 인권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Marine Pustorino	시의 거리 조명과 재생에너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André Malrait	시의 역사 기념물과 문화유산, 재향군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Catherine Giner	시의 노인정책을 담당하고 있음

○ 부단체장 신분과 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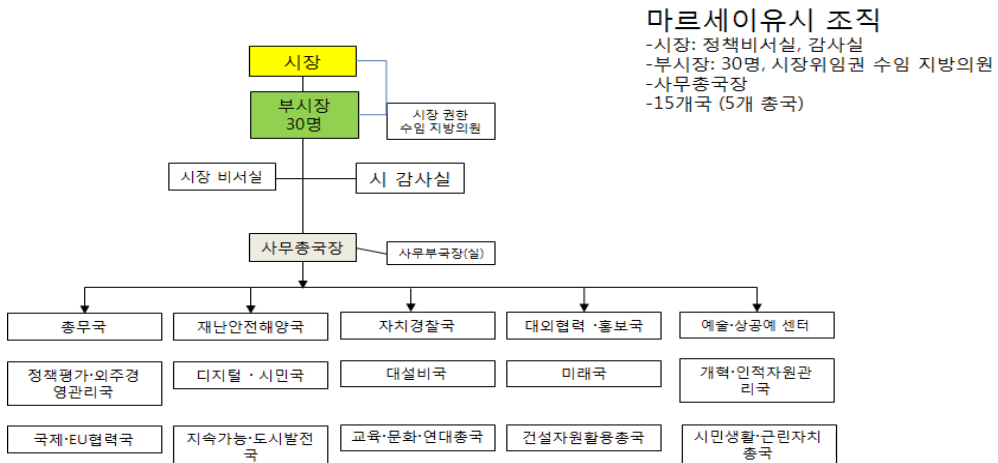
- 마르세유시 부시장은 지방의원이 겸하는 구조이며, 고정된 임기는 없고 정치적 판단에 따름

○ 부단체장의 보수 수준

- 시장과 부시장의 보수는 통합지방자치법전(CGCT) 제L.2123-23조에 의하면, “공무원 보수표에 근거하여 주민 수 규모에 따라서 기본보수가 결정됨
- 인구 10만 명 이상의 지방정부는 월별 시장 €5,512.13(한화 약 768만원), 부시장 €2,508.97(한화 약 346만원)임
- 인구 5만~9만9천999명의 지방정부는 월별 시장 €4,181.62(한화 약 578만원), 부시장 €1,672.65(한화 약 231만원)임
- 인구 2만~4만9천999명의 지방정부는 월별 시장 €3,421.32(한화 약 473만원), 부시장 €1,254.48(한화 약 173만원)임
- 따라서 부시장직만을 수행하는데 따른 연봉은 약 €30,107(한화 약 4천128만원) 수준임

○ 마르세유시 조직도

- 행정실무는 시장과 부시장의 지휘를 받는 사무총국장이 총괄하고 있으며, 부시장은 각자 15개의 국을 나누어 관할하고 있음



○ 소결

- 마르세유시의 부시장은 모두 지방의원이며, 시장으로부터 15개 국에 대한 사무권을 위임받아 소관 업무의 최종적인 정치적 책임자로서 기능하고 있음

## 2. 독일(베를린)

○ 시의 규모 및 기관구성의 유형

- 인구 : 3,513,026명(2012년)
- 면적 : 891.85km<sup>2</sup>
- 베를린시는 의회에서 통치시장을 선출하고, 이 통치시장이 의회 의원 중에 8명을 참사회 위원으로 임명한 후, 그 중 2명을 부시장에 해당하는 시장에 임명하는 기관통합형의 구조를 택하고 있음

○ 근거법령

- 베를린시의 부단체장인 시장(Bürgermeister)에 대한 내용은 베를린 헌법(Verfassung von Berlin) 제56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음
- 베를린 헌법에 따르면 베를린의회에 의해서 선출되는 통치시장(regierender Bürgermeister)은 2명의 참사회위원을 자신을 대리하는 대행자(시장)로 임명함
- 참사회직무규정(Geschäftsordnung des Senates Berlins) 제4조(통치시장 대행)에도 통치시장의 대행자(시장)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
- 베를린은 함부르크, 브레멘 등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도시국가임. 일반적으로 다수의 도시, 크라이스, 게마인데를 포함하고 있는 다른 광역 주와는 달리 주인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기능도 담당하고 있음
- 베를린시의 참사회(Senat)는 베를린 주정부이자 시정부로서 행정을 이끌고 있으며, 주(시)의회에 의해서 선출된 통치시장(regierender Bürgermeister)과 8명의 참사회위원(장관)으로 구성되며, 통치시장은

- 대외적으로 베를린을 대표하며, 참사회의 의장의 역할을 수행함
- 통치시장은 참사회 구성원을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베를린헌법 제56조 제2항)

□ 베를린 헌법(Verfassung von Berlin) 제56조 제2항

(2) Die Senatoren werden vom Regierenden Bürgermeister ernannt und entlassen. Er ernennt zwei Senatoren zu seinen Stellvertretern (Bürgermeister)

(2) 참사회위원은 통치시장에 의해서 임명되고, 해임된다. 통치시장은 2명의 참사회위원을 자신의 대행자(시장)로 임명한다.

□ 참사회직무규정(Geschäftsordnung des Senates Berlins) 제4조

Der Regierende Bürgermeister/Die Regierende Bürgermeisterin wird bei Abwesenheit oder sonstiger Verhinderung durch die Bürgermeisterin oder durch den Bürgermeister nach Maßgabe des Vertretungsplans vertreten. Sind auch diese abwesend oder verhindert, so wird er/sie durch das an Dienstjahren älteste Senatsmitglied, bei mehreren Senatsmitgliedern mit gleicher Dienstzeit durch das von diesen an Lebensjahren älteste Senatsmitglied vertreten.

(남성)통치시장/(여성)통치시장의 부재 시 또는 그 외의 제약이 있을 시 대행계획에 따라 (남성)시장/(여성)시장이 대행한다. 이들(시장) 또한 부재 중이거나 또는 제약이 있을 시 근무기간이 가장 오래된 참사회구성원이 대행하며, 다수의 참사회구성원의 근무기간이 동일한 경우 나이가 가장 많은 참사회구성원이 대행한다.

○ 부단체장 정수

- 베를린 헌법 제56조 제2항에 정하고 있는 부단체장의 정수는 2명임

○ 부단체장 명칭

- 베를린시 부단체장은 ‘시장(Bürgermeister)’이라고 칭하고 있으며, 의회에 의해서 선출된 베를린시장은 ‘통치시장(regierender Bürgermeister)’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 부단체장 임명방식

- 통치시장은 자신을 대행하는 2명의 시장을 둘 수 있으나 이들은 반드시 참사회의 구성원이어야 함. 즉, 통치시장이 대행자인 시장을 임명할 수 있으나 반드시 의회에 의해서 선출된 내각 중에서 임명할 수 있음

- 부단체장은 참사회위원 중에서 통치시장이 임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치시장이 임명 주체이며, 임명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참사회위원은 의회에서 선서를 한 이후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부단체장인 시장도 참사회위원 중의 한 명으로써 취임선서를 하고 있으나 부단체장으로서의 선서는 따로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부단체장인 2명의 시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참사회위원 중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자가 되며, 만약 근무기간이 동일하면 그 중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자가 대행하도록 되어 있음

○ 부단체장 업무와 권한

- 시장은 통치시장 부재 시 또는 유고 시 대행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어서 대행자(Stellvertreter)란 명칭도 사용되고 있음
- 부단체장인 시장이 수행하는 업무는 소관부서의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있음
- 통치시장을 대행하는 시장은 내무·스포츠 참사회위원인 Frank Henkel(CDU)와 도시개발·환경 참사회위원인 Michael Müller(SPD)가 맡고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각각의 부처를 총괄하는 책임을 지고 있음
- 통치시장의 대행자인 시장은 이론적으로 헌법상 통치시장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으나 주로 대행계획(Vertretungsplan)에 따라 대행이 이루어지고 있음

○ 부단체장 신분과 임기

- 부단체장의 신분에 따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참사회위원법(Senatorengesetz)의 적용을 받고 있음
- 참사회의 구성원은 정치적으로 임명되었다는 점에서 정무직의 신분을 가지며, 형법상의 의미로는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참사회의 구성원들에 공무원법을 적용하고 있지 않으며,

- 다만 참사회법이 공무원 규정의 적용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따라서 참사회구성원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업무상 또는 업무 외적인 과오에 대해서는 정치적 징계(통치시장에 대한 불신임, 참사회위원의 해임)를 하게 됨
  - 선거가 매년 5년에 한 번씩 실시되고 있어서 통치시장과 시장의 임기는 5년을 기본으로 볼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임기를 정하고 있지는 않음. 왜냐하면 통치시장에 대한 의회불신임이 이루어지는 경우 부단체장인 시장의 임기도 조기에 종료될 수 있기 때문임
  - 부단체장인 참사회위원의 임기는 통치시장의 임기와 연동되어 있어 통치시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의회불신임으로 임기가 조기에 종료되는 경우, 이들의 임기도 조기에 종료됨
  - 그리고 통치시장이 참사회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부단체장의 임기는 변할 수 있음

#### ○ 부단체장의 보수 수준

- 부단체장인 시장의 보수는 참사회위원법(Senatorengesetz) 제11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보수그룹 B11의 기본급의 107%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이외에도 가족수당을 포함한 각종 수당을 받으며, 예산계획에 포함된 업무수행경비의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음
- 부단체장인 시장은 참사회위원 중에서 임명되기 때문에 보수는 다른 주의 장관인 참사회위원의 보수와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남
- 베를린시의 부단체장의 연봉은 주 장관 연봉과 비슷한데, 현재 독일 각 주의 장관 평균 보수는 월 €11,000(한화 약 1천5백만원)으로 연봉으로는 €132,000수준(한화 약 1억8천만원)이며, 경력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음
- 2012년 기준 베를린시의 부단체장인 시장의 보수는 월 €11,300(한화 약 1천5백6십만원)으로 연봉은 €135,600(한화 약 1억8천7백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참사회위원법(Senatorengesetz) 제11조 제1항

(1) Die Mitglieder des Senats erhalten vom Beginn des Kalendermonats an, in dem ihr Amt beginnt, bis zum Schluss des Kalendermonats, in dem ihr Amt endet, folgende Amtsbezüge:

- a) ein Amtsgehalt, und zwar der Regierende Bürgermeister in Höhe von 120 vom Hundert des Grundgehalts der Besoldungsgruppe B 11, die Bürgermeister in Höhe von 107 vom Hundert des Grundgehalts der Besoldungsgruppe B 11, die Senatoren in Höhe des Grundgehalts der Besoldungsgruppe B 11;

b) einen Ortszuschlag der Stufe 1 sowie einen Familienzuschlag in Höhe der in Besoldungsgruppe B 11 zustehenden Beträge;

c) eine Dienstaufwandsentschädigung nach Maßgabe des Haushaltsplans.

Für das Amtsgehalt und den Ortszuschlag der Stufe 1 gilt das Bundesbesoldungsgesetz in der vor dem 1. Juli 1997 geltenden Fassung. 3An allgemeinen prozentualen Anpassungen der Besoldung der Beamten der Besoldungsgruppe B 11 nehmen das Amtsgehalt und der Ortszuschlag der Stufe 1 sowie der Familienzuschlag teil.

(1) 참사회의 구성원은 (위원)직을 시작하는 월(Kalendermonat)부터 (위원)직이 끝나는 월까지 다음과 같은 보수를 받는다.

a) 봉급, 그리고 실은 통치시장은 보수그룹 B11의 기본급의 120%를 받는다.

시장은 보수그룹 B11의 기본급의 107%를 받는다.

참사회위원들은 보수그룹 B11의 기본급을 받는다.

b) 보수그룹 B11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족수당과 등급 1의 근무지수당

c) 예산계획에 따른 업무경비 정산(보상)

봉급과 등급 1의 근무지수당은 1997년 7월 1일 이전에 효력을 발휘하던 연방보수법이 적용된다. 보수그룹 B11에 속하는 공무원보수의 일반적인 백분율 조정은 봉급, 등급 1의 근무지수당 그리고 가족수당을 포함한다.

○ 베를린시 조직도

- 다음 장의 베를린시 행정 조직도에서 보듯이, 통치시장의 비서실을 제외하면 8개의 참사회(부서)로 구성되어 있음
- 각각의 참사회는 주의 장관인 참사위원, 그리고 2명의 차관으로 구성되어 있음



- 부서별로는 최소 2개의 국에서 최대 10개 이상의 국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참사회 간의 국의 수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통치시장 부재 시 2명의 시장이 부단체장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별도의 직위로 구분되는 것은 아님
- 시장은 일반적으로 소관부서를 운영하면서 대행계획에 기초하여 통치시장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



○ 소결

- 부시장의 역할을 하는 2명의 시장은 모두 지방의원이며, 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의 관리권을 위임받아 운영을 책임지고 있음

### 제3절 아시아 국가

#### 1. 일본

##### 1) 도쿄도(東京都)

○ 자치단체 규모 및 기관구성의 유형

- 인구 : 13,185,502명(2011년)
- 면적 : 2,187.66km<sup>2</sup>
- 공무원 : 167,243명(2014년)
- 일본은 일반적인 의원내각제 국가와 달리 수장제를 채택하고 있음. 즉,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원을 주민의 직접선거를 통해 각각 구성하는 기관 대립형을 취하고 있음

○ 근거법령

- 일본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61조  
(※ 광역자치단체에 부단체장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자치단체 조례로 부단체장을 두지 않을 수도 있음)
- 도쿄도 부지사 정수 조례(東京都副知事の定数条例)

□ 일본 지방자치법(地方自治法)

第十三条

○2 日本国民たる普通地方公共団体の住民は、この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属する普通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長、副知事若しくは副市町村長、選挙管理委員若しくは監査委員又は公安委員会の委員の解職を請求する権利を有する。

제13조의2. 주민은 법률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의원, 단체장, 부지사, 부시정촌장, 선거관리위원, 감사위원, 공안위원회 위원의 해직 청구할 권리를 보유한다.

第一百六十一条 都道府県に副知事を、市町村に副市町村長を置く。ただし、条例で置かないことができる。

○2 副知事及び副市町村長の定数は、条例で定める。

제161조. 도도부현에 부지사를, 시정촌에 부시정촌장을 둔다. 단 조례로 두지 않을 수가 있다.

2. 부지사와 부시정촌장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 도쿄도 부지사 정수 조례(東京都副知事の定数条例)

東京都議会の議決を経て、東京都副知事の定数条例を次のように定める。

東京都副知事の定数条例

都に副知事四人を置く。

도쿄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쿄도 부지사의 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도쿄도 부지사 정수조례

도에 부지사 4명을 둔다.

○ 부단체장 정수

- 도쿄도 부단체장은 정수 조례에 따라 4명임
- 그러나 현재는 3명만 임명되어 있으며, 미충원 사유는 명확하지 않음

○ 부단체장 명칭

- 부단체장은 ‘도쿄도 부지사(東京都副知事)’로 칭함

○ 부단체장 임명방식

- 일본 지방자치법 제162조에 부단체장의 임명방식을 정하고 있는데, 단체장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 도쿄도 부지사 역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 도쿄도 지사가 임명함

□ 일본 지방자치법(地方自治法)

第一百六十二条 副知事及び副市町村長は、普通地方公共団体の長が議会の同意を得てこれを選任する。

제162조 부지사나 부시장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 선임한다.

○ 부단체장 업무와 권한

- 지방자치법 제167조에서 부단체장의 역할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단체장을 보좌하고 담당사무의 직원들을 감독하며 단체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함

□ 일본 지방자치법(地方自治法)

第一百六十七条 副知事及び副市町村長は、普通地方公共団体の長を補佐し、普通地方公

共団体の長の命を受け政策及び企画をつかさどり、その補助機関である職員の担任する事務を監督し、別に定めるところにより、普通地方公共団体の長の職務を代理する。

○2 前項に定めるもののほか、副知事及び副市町村長は、普通地方公共団体の長の権限に属する事務の一部について、第百五十三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委任を受け、その事務を執行する。

○3 前項の場合においては、普通地方公共団体の長は、直ちに、その旨を告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167조 부지사나 부시정촌장은 자치단체의 장을 보좌하고 자치단체 장의 명령을 받아 기획을 담당하며, 직원 담당 사무를 감독하고, 별도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2 전항 규정외에, 부지사와 부시정촌장은 자치단체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일부를 제 153조제1항 규정에 따라 위임을 받아 사무를 집행한다.

3 전항의 경우, 자치단체 장은 즉각 이 취지를 고지해야 한다.

－ 도쿄도 부지사의 담당 업무는 도쿄도 부지사의 담임사항(東京都副知事の担任事項)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부 지 사	업 무
安藤立美 (안도 타츠미)	① 저출산, 고령화 대책, 교육 개혁 관련 과제를 맡고 있으며, ② 재무국, 주세국, 도시정비국, 복지보건국, 건설국, 항만국, 회계관리국 조직을 담당하고 ③ 교육위원회, 수용위원회와 연락 관계에 있음
秋山俊行 (아키야마 토시유키)	① 도쿄올림픽, 다마섬 진흥 관련 과제를 맡고 있으며, ② 총무국, 생활문화국, 올림픽준비국, 도쿄소방청, 청소년·치안 대책본부, 병원경영본부 조직을 담당하고 ③ 인사위원회,公安위원회와 연락 관계에 있음
前田信弘 (마에다 노부히로)	① 방재·위기관리 관련 과제를 맡고 있으며, ② 중소기업·산업진흥 관련 정책기획국, 환경국, 산업노동국, 교통국, 수도국, 하수도국, 중앙도매시장 조직을 담당하고 ③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 노동위원회와 연락 관계에 있음

－ 도쿄도의 직위별 권한 관계를 규정하는 도쿄도 사안 결정규정(東京都事案決定規程)

- 제6조 ‘지사는 미리 범위를 정하여 지사결정대상의 일부를 부지사에

게 결정하도록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 제8조 ‘지사결정대상사안에 관하여 시급히 결정할 필요가 있고, 지사가 출장이나 휴가 그 외 이유로 부재할 때 미리 지사가 지정하는 부지사가 결정한다’라고 규정함
- 도쿄도 부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1항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도쿄 도지사의 직무대리 순서에 관한 규칙(東京都知事の職務代理順序に関する規則)에 따라 도쿄 지사 유고시 그 직을 수행함
- 현재 제1순위는 安藤立美(안도 타츠미), 제2순위 秋山俊行(아키야마 토시유키), 제3순위 前田信弘(마에다 노부히로) 순으로 되어 있음

□ 일본 지방자치법(地方自治法)

第百五十二条 普通地方公共団体の長に事故があるとき、又は長が欠けたときは、副知事又は副市町村長がその職務を代理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副知事又は副市町村長が二人以上あるときは、あらかじめ当該普通地方公共団体の長が定めた順序、又はその定めがないときは席次の上下により、席次の上下が明らかでないときは年齢の多少により、年齢が同じであるときはくじにより定めた順序で、その職務を代理する。

○2 副知事若しくは副市町村長にも事故があるとき若しくは副知事若しくは副市町村長も欠けたとき又は副知事若しくは副市町村長を置かない普通地方公共団体において当該普通地方公共団体の長に事故があるとき若しくは当該普通地方公共団体の長が欠けたときは、その補助機関である職員のうちから当該普通地方公共団体の長の指定する職員がその職務を代理する。

○3 前項の場合において、同項の規定により普通地方公共団体の長の職務を代理する者がいないときは、その補助機関である職員のうちから当該普通地方公共団体の規則で定めた上席の職員がその職務を代理する。

제152조. 지방자치단체장이 사고 시 또는 결원 시에 부지사나 부시정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이 경우 부지사나 부시정촌장이 2인 이상 있을 때는 미리 해당 자치단체의 장이 규정한 순서나 그 규정이 없을 때는 서열의 상하에 따라, 서열의 상하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연령에 따라, 연령이 같을 때는 추첨으로 정한 순서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2. 부지사나 부시정촌장이 사고가 있을 때, 부지사나 부시정촌장이 결여되었을 때 또는 부지사나 부시정촌장을 두지 않는 자치단체에서 단체장에게 사고가 있거나 결여되었을 때, 그 보조기관인 직원 중 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직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3. 전항의 경우, 동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없을 때 그 보조기관인 직원 가운데 해당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규정한 상석의 직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 도쿄 도지사의 직무대리 순서에 관한 규칙(東京都知事の職務代理順序に関する規則)  
東京都知事の職務代理順序に関する規則を公布する。  
東京都知事の職務代理順序に関する規則  
知事に事故があるとき、又は知事が欠けたときは、次の順序で副知事はその職務を代理する。  
第一順位 副知事 安藤立美  
第二順位 副知事 秋山俊行  
第三順位 副知事 前田信弘  
도쿄 도지사의 직무 대리 순서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다.  
도쿄 도지사의 직무 대리 순서에 관한 규칙  
지사에게 사고가 있을 때, 또는 지사가 결위되었을 때는 다음의 순서로 부지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순위 안도 타츠미  
제2순위 아키야마 토시유키  
제3순위 마에다 노부히로

○ 부단체장 신분과 임기

- 도쿄도 부지사의 신분은 지방자치법상 특별직 공무원으로 도쿄도 소속이 됨
- 도쿄도 부지사는 광역자치단체의 정책국장 출신 등이 임명되는 등 일반 공무원의 최고직으로 인식되고 있음
- 지방자치법 제163조에 임기와 임기중반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지사의 임기는 4년으로 단체장이 임기 중에도 해직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 또한 주민에 의한 해직 청구도 가능함. 유권자는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연서를 통해 단체장에게 부지사의 해직을 청구할 수 있음(지방자치법 86조). 다만 해직 청구는 취임일로부터 1년간이나 의회 의결일로부터 1년간은 할 수 없음(지방자치법 제88조)

## □ 일본 지방자치법(地方自治法)

第八十六条 選挙権を有する者（道の方面公安委員会の委員については、当該方面公安委員会の管理する方面本部の管轄区域内において選挙権を有する者）は、政令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総数の三分の一（その総数が四十万を超え八十万以下の場合にあつてはその四十万を超える数に六分の一を乗じて得た数と四十万に三分の一を乗じて得た数とを合算して得た数、その総数が八十万を超える場合にあつてはその八十万を超える数に八分の一を乗じて得た数と四十万に六分の一を乗じて得た数と四十万に三分の一を乗じて得た数とを合算して得た数）以上の者の連署をもつて、その代表者から、普通地方公共団体の長に対し、副知事若しくは副市町村長、選挙管理委員若しくは監査委員又は公安委員会の委員の解職の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る。

제86조. 선거권을 가진 자는 정령 규정에 따라 그 총수 3분의1 이상의 자의 연서로, 그 대표자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부지사나 부시장, 선거관리위원, 감사위원 또는 공안위원회 위원의 해직 청구를 할 수 있다.

第八十八条 第八十六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副知事又は副市町村長の解職の請求は、その就職の日から一年間及び同条第三項の規定による議会の議決の日から一年間は、これ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

제88조.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지사나 부시장의 해직 청구는 그 취임일로부터 1년간 및 동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 일로부터 1년간은 이를 할 수 없다.

第六十三条 副知事及び副市町村長の任期は、四年とする。ただし、普通地方公共団体の長は、任期中においてもこれを解職することができる。

제163조 부지사와 부시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기 중에도 이를 해직할 수 있다.

## ○ 부단체장의 보수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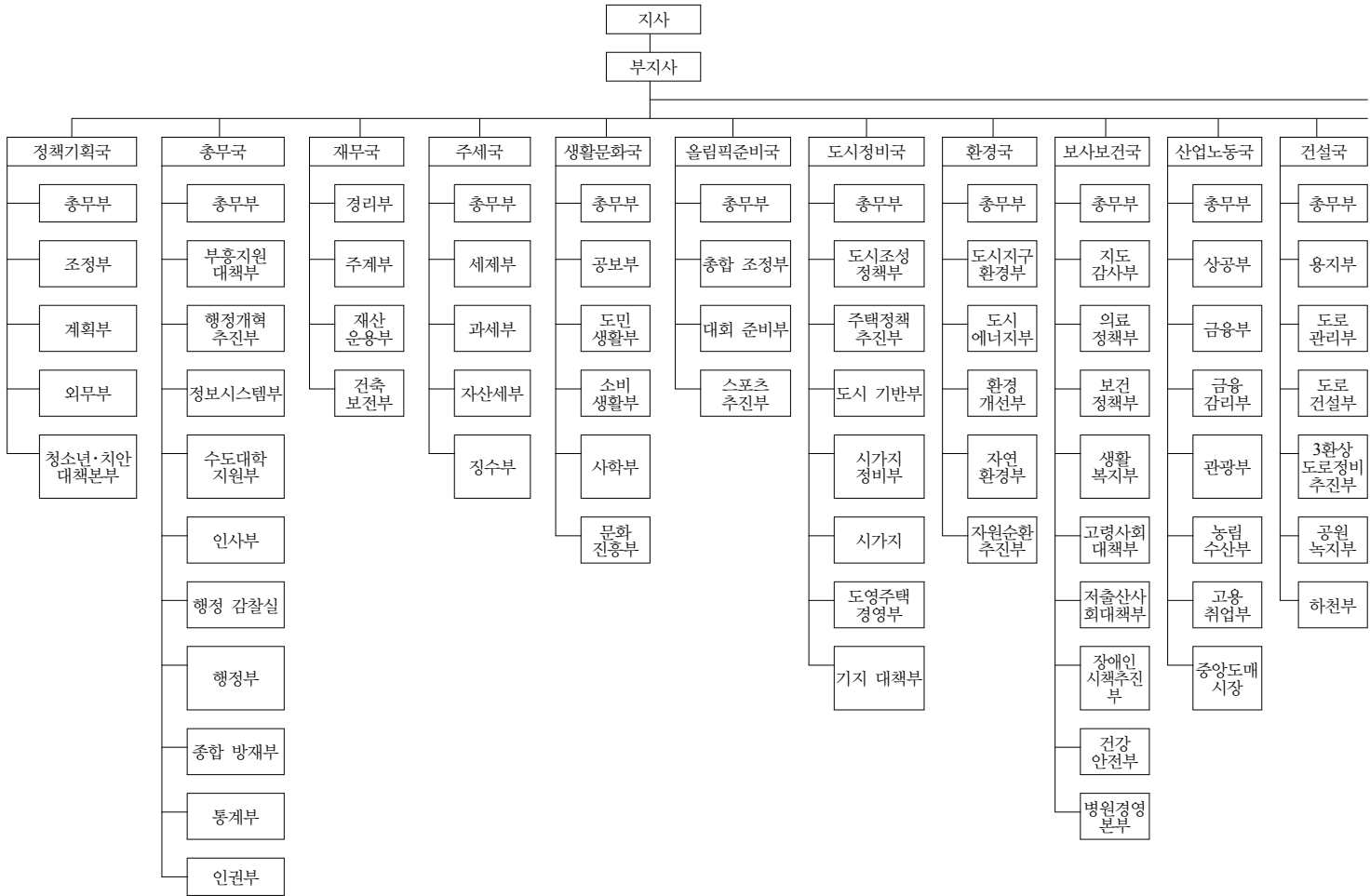
- 2014년 총무성의 「급료·정원등조사결과」에 따르면 도쿄도 부지사의 연봉은 ¥14,508,000(한화 약 1억3천5백만원) 수준임

## ○ 도쿄도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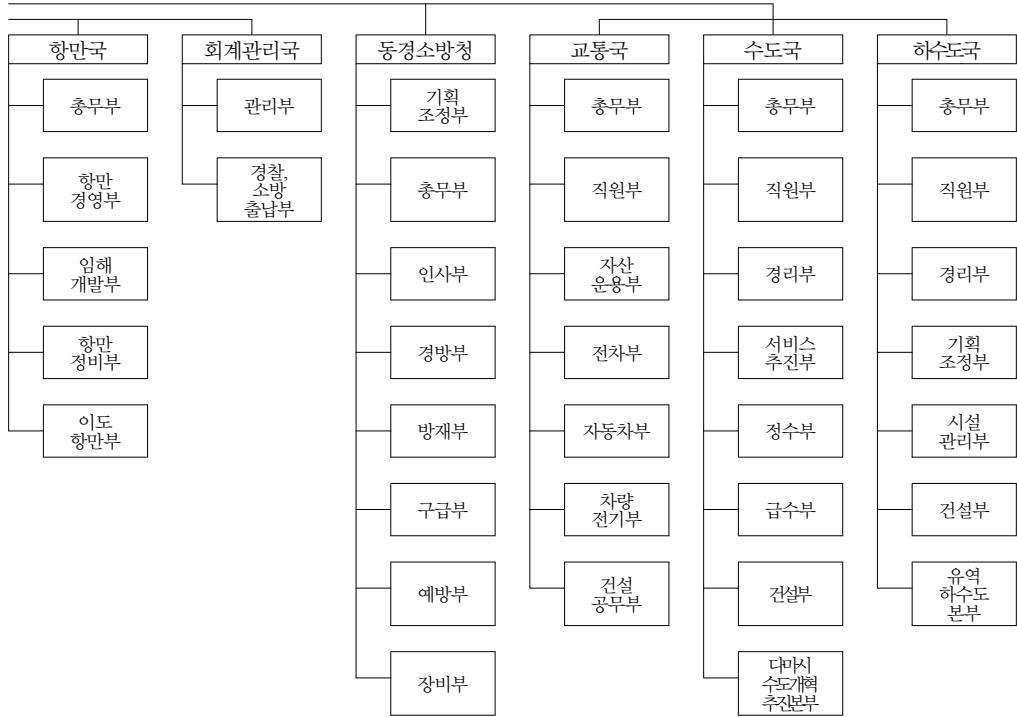
- 다음 장의 도쿄도 조직도에 따르면, 도쿄도는 부지사 관할 아래 총 17개의 국을 운영하고 있음

## ○ 소결

- 도쿄도 부지사는 집행조직의 책임자로서 한국의 부단체장과 가장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음







## 2) 가나가와현(神奈川県)

### ○ 자치단체 규모 및 기관구성의 유형

- 인구 : 9,097,401명(2014년)
- 면적 : 2,416.04km<sup>2</sup>
- 공무원 : 73,399명(2013명)
- 수장제에 따라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원을 주민의 직접선거를 통해 각각 구성하는 기관 대립형을 취하고 있음

### ○ 근거법령

- 일본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61조 (※ 광역자치단체에 부단체장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자치단체 조례로 부단체장을 두지 않을 수도 있음)
- 가나가와현 부지사 정수 조례(神奈川県副知事定数条例)

#### □ 일본 지방자치법(地方自治法)

##### 第十三条

○2 日本国民たる普通地方公共団体の住民は、この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属する普通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長、副知事若しくは副市町村長、選挙管理委員若しくは監査委員又は公安委員会の委員の解職を請求する権利を有する。

제13조의2. 주민은 법률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의원, 단체장, 부지사, 부시정촌장, 선거관리위원, 감사위원, 공안위원회 위원의 해직 청구할 권리를 보유한다.

第一百六十一条 都道府県に副知事を、市町村に副市町村長を置く。ただし、条例で置かないことができる。

○2 副知事及び副市町村長の定数は、条例で定める。

제161조. 도도부현에 부지사를, 시정촌에 부시정촌장을 둔다. 단 조례로 두지 않을 수가 있다.

2. 부지사와 부시정촌장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 □ 가나가와현 부지사 정수 조례(神奈川県副知事定数条例)

神奈川県副知事定数条例をここに公布する。

神奈川県副知事定数条例

地方自治法(昭和22年法律第67号)第161条第2項の規定に基づき、副知事の定数を3人とする。

가나가와현 부지사 정수 조례를 여기에 공포한다.

가나가와현 부지사 정수 조례

지방자치법(쇼와 22년 법률 제67조) 제16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지사의 정수를 3명으로 한다.

○ 부단체장 정수

- 가나가와현의 부단체장은 정수 조례에 따라 3명임
- 그러나 2013년 3월 1명이 퇴임한 이후 다시 임명되지 않아 현재는 2명만 임명되어 있으며, 그 사유는 재정적 문제로 보임(가나가와신문 2014.5.20.)

○ 부단체장 명칭

- 부단체장은 ‘가나가와현 부지사(神奈川県副知事)’로 칭함

○ 부단체장 임명방식

- 일본 지방자치법 제162조에 부단체장의 임명방식을 정하고 있는데, 단체장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 가나가와현 부지사 역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 가나가와현 지사가 임명함

□ 일본 지방자치법(地方自治法)

第一百六十二条 副知事及び副市町村長は、普通地方公共団体の長が議会の同意を得てこれを選任する。

제162조 부지사나 부시장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 선임한다.

○ 부단체장 업무와 권한

- 지방자치법 제167조에서 부단체장의 역할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단체장을 보좌하고 담당사무의 직원들을 감독하며 단체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함

□ 일본 지방자치법(地方自治法)

第百六十七条 副知事及び副市町村長は、普通地方公共団体の長を補佐し、普通地方公共団体の長の命を受け政策及び企画をつかさどり、その補助機関である職員の担任する事務を監督し、別に定めるところにより、普通地方公共団体の長の職務を代理する。

○2 前項に定めるもののほか、副知事及び副市町村長は、普通地方公共団体の長の権限に属する事務の一部について、第百五十三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委任を受け、その事務を執行する。

○3 前項の場合においては、普通地方公共団体の長は、直ちに、その旨を告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167조 부지사나 부시정촌장은 자치단체의 장을 보좌하고 자치단체 장의 명령을 받아 기획을 담당하며, 직원 담당 사무를 감독하고, 별도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2 전항 규정외에, 부지사나 부시정촌장은 자치단체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일부를 제 153조제1항 규정에 따라 위임을 받아 사무를 집행한다.

3 전항의 경우, 자치단체 장은 즉각 이 취지를 고지해야 한다.

- 가나가와현 부지사의 담당 업무는 가나가와현 부지사의 담임규정사항 규정(神奈川県副知事の担任事項を定める規程)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부 지 사	업 무
黒川雅夫 (쿠로카와 마사오)	① 정책국, 총무국, 안전방재국, 산업노동국, 회계국, 현정 전반 총괄 관련 업무, ② 공영기업관리자, 교육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인사위원회, 감사위원, 공안위원회, 노동위원회와의 연락 조정 관련 업무, ③ 그 외 지사의 지시 사항 등을 수행함
吉川伸治 (요시카와 신지)	① 현민국, 환경농정국, 보건복지국, 현토정비국, 헬스케어 뉴 프론티어추진국 관련 업무, ② 납치문제 관련 업무, ③ 수용위원회, 해구어업조정위원회, 내수면어장관리위원회와의 연락조정, ④ 그 외 지사 지시 사항 등을 수행함

- 가나가와현 부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1항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가나가와사무결재규정(神奈川県事務決裁規程)에 따라 가나가와현 지사 유고시 그 사무를 대결할 수 있음. 단, 부지사는 지사가 결재해야만 하는 사무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전결할 수 있음
- 가나가와현 지사의 직무대리 순서는 가나가와현 지사의 직무대리 순서에 관한 규칙(神奈川県知事の職務代理の順序に関する規則)에 따라 규정되고 있음
  - 현재 제1순위는 黒川雅夫(쿠로카와 마사오), 제2순위 吉川伸治(요시카와 신지) 순으로 되어 있음

□ 일본 지방자치법(地方自治法)

第百五十二条 普通地方公共団体の長に事故があるとき、又は長が欠けたときは、副知事又は副市町村長がその職務を代理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副知事又は副市町村長が二人以上あるときは、あらかじめ当該普通地方公共団体の長が定めた順序、又はその定めがないときは席次の上下により、席次の上下が明らかでないときは年齢の多少により、年齢が同じであるときはくじにより定めた順序で、その職務を代理する。

○2 副知事若しくは副市町村長にも事故があるとき若しくは副知事若しくは副市町村長も欠けたとき又は副知事若しくは副市町村長を置かない普通地方公共団体において当該普通地方公共団体の長に事故があるとき若しくは当該普通地方公共団体の長が欠けたときは、その補助機関である職員のうちから当該普通地方公共団体の長の指定する職員がその職務を代理する。

○3 前項の場合において、同項の規定により普通地方公共団体の長の職務を代理する者がいないときは、その補助機関である職員のうちから当該普通地方公共団体の規則で定めた上席の職員がその職務を代理する。

제152조. 지방자치단체장이 사고 시 또는 결원 시에 부지사나 부시정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이 경우 부지사나 부시정촌장이 2인 이상 있을 때는 미리 해당 자치단체의 장이 규정한 순서나 그 규정이 없을 때는 서열의 상하에 따라, 서열의 상하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연령에 따라, 연령이 같을 때는 추첨으로 정한 순서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2. 부지사나 부시정촌장이 사고가 있을 때, 부지사나 부시정촌장이 결여되었을 때 또는 부지사나 부시정촌장을 두지 않는 자치단체에서 단체장에게 사고가 있거나 결여되었을 때, 그 보조기관인 직원 중 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직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3. 전항의 경우, 동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없을 때 그 보조기관인 직원 가운데 해당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규정한 상석의 직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 가나가와현 지사의 직무대리 순서에 관한 규칙(神奈川県知事の職務代理の順序に関する規則)

神奈川県知事の職務代理の順序に関する規則をここに公布する。

神奈川県知事の職務代理の順序に関する規則

地方自治法(昭和22年法律第67号)第152条第1項の規定により知事の職務を代理する副知事の順序は、次のとおりとする。

第1順位 副知事 黒川雅夫

第2順位 副知事 吉川伸治

가나가와현 지사의 직무대리 순서에 관한 규칙을 여기에 공포한다.

가나가와현 지사의 직무대리 순서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법(쇼와 22년 법률 제67호) 제1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부지사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제1순위 쿠로카와 마사오

제2순위 요시카와 신지

### ○ 부단체장 신분과 임기

- 가나가와현 부지사의 신분은 지방자치법상 특별직 공무원으로 가나가와현 소속이 됨
- 지방자치법 제163조에 임기와 임기중반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지사의 임기는 4년으로 단체장이 임기 중에도 해직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 부지사는 대체로 한 번의 임기를 거치거나 도중에 지사 교체로 사퇴하는 경우가 많으나, 최근 쿠로카와 부지사는 전임 지사가 임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후임 지사에 의해 다시 재임되었음
- 또한 주민에 의한 해직 청구도 가능함. 유권자는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연서를 통해 단체장에게 부지사의 해직을 청구할 수 있음(지방자치법 86조). 다만 해직 청구는 취임일로부터 1년간이나 의회 의결일로부터 1년간은 할 수 없음(지방자치법 제88조)

## □ 일본 지방자치법(地方自治法)

第八十六条 選挙権を有する者(道の方面公安委員会の委員については、当該方面公安委員会の管理する方面本部の管轄区域内において選挙権を有する者)は、政令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総数の三分の一(その総数が四十万を超え八十万以下の場合にあつてはその四十万を超える数に六分の一を乗じて得た数と四十万に三分の一を乗じて得た数とを合算して得た数、その総数が八十万を超える場合にあつてはその八十万を超える数に八分の一を乗じて得た数と四十万に六分の一を乗じて得た数と四十万に三分の一を乗じて得た数とを合算して得た数)以上の者の連署をもつて、その代表者から、普通地方公共団体の長に対し、副知事若しくは副市町村長、選挙管理委員若しくは監査委員又は公安委員会の委員の解職の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る。

제86조. 선거권을 가진 자는 정령 규정에 따라 그 총수 3분의1 이상의 자의 연서로, 그 대표자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부지사나 부시정촌장, 선거관리위원, 감사위원 또는 공안위원회 위원의 해직 청구를 할 수 있다.

第八十八条 第八十六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副知事又は副市町村長の解職の請求は、その就職の日から一年間及び同条第三項の規定による議会の議決の日から一年間は、これをする事ができない。

제88조.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지사나 부시정촌장의 해직 청구는 그 취임일로부터 1년간 및 동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 일로부터 1년간은 이를 할 수 없다.

第六十三条 副知事及び副市町村長の任期は、四年とする。ただし、普通地方公共団体の長は、任期中においてもこれを解職することができる。

제163조 부지사와 부시정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기 중에도 이를 해직할 수 있다.

## ○ 부단체장의 보수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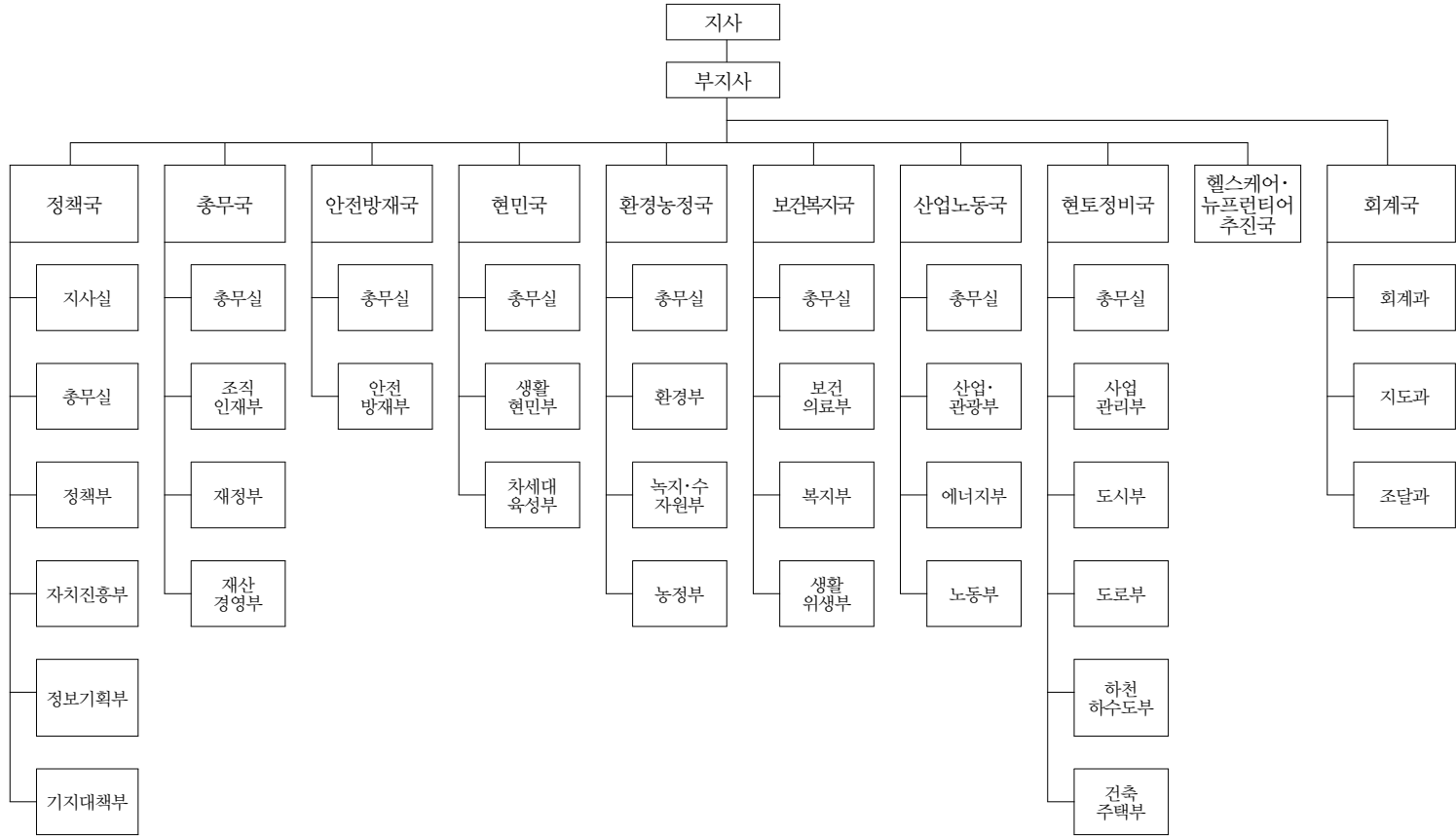
- 2014년 총무성의 「급료·정원등조사결과」에 따르면 가나가와현 부지사의 연봉은 ¥11,136,000(한화 약 1억4백만원) 수준임

## ○ 가나가와현 조직도

- 다음 장의 가나가와현 조직도에 따르면, 가나가와현은 부지사 관할 아래 총 10개의 국과 36개의 과를 운영하고 있음

## ○ 소결

- 가나가와현 부지사는 집행조직의 책임자로서 한국의 부단체장과 가장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음





## 2. 중국(베이징)

### ○ 시의 규모 및 기관구성의 유형

- 인구 : 21,150,000명(2013년)
- 면적 : 16,808km<sup>2</sup>
- 중국의 기관구성은 베이징시 인민대표회의에서 시장과 부시장을 선거를 통해 선출하기 때문에 기관통합형과 유사하나, 의원이 시장과 부시장을 겸직하지 않고 직업공무원이 담당한다는 점에서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음

### ○ 근거법령

- 근거법령에는 『중화인민공화국헌법(中华人民共和国宪法)』 제101조, 『당정영도간부선발 임용조례 (党政领导干部选拔任用工作条例)』 제2조부터 제49조까지
- 『중화인민공화국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정부조직법(中华人民共和国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和 地方各级人民政府组织法)』 제8조제5항, 22조, 제44조제9항, 제62조
- 『베이징시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의 국가기관 공직자의 임명과 파면에 관한 조례(北京市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任免国家机关工作人员条例)』, 제6조제1항 및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가 해당함

#### □ 중화인민공화국헌법(中华人民共和国宪法)

**第一百零一条** 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分别选举并且有权罢免本级人民政府的省长和副省长、市长和副市长、县长和副县长、区长和副区长、乡长和副乡长、镇长和副镇长。

제101조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본급 인민정부의 성장과 부성장, 시장과 부시장, 현장(县长)과 부현장, 구장(区长)과 부구장, 향장(乡长)과 부향장, 진장(镇长)과 부진장을 선거 및 파면할 수 있다.

#### □ 중화인민공화국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정부조직법(中华人民共和国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和 地方各级人民政府组织法)

**第八条** 县级以上的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行使下列职权

(五) 选举省长、副省长，自治区主席、副主席，市长、副市长，州长、副州长，县长、副县长，区长、副区长；

제8조의 5.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성장, 부성장, 자치구 주석, 부주석, 시장, 부시장, 주장, 부주장, 현장, 부현장, 구장(区长), 부구장을 선거할 수 있다.

**第四十四条** 县级以上的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行使下列职权：

(九) 在本级人民代表大会闭会期间，决定副省长、自治区副主席、副市长、副州长、副县长、副区长的个别任免；在省长、自治区主席、市长、州长、县长、区长和人民法院院长、人民检察院检察长因故不能担任职务的时候，从本级人民政府、人民法院、人民检察院副职领导人员中决定代理的人选；决定代理检察长，须报上一级人民检察院和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备案；

제44조의 9. 본급 인민대표대회의 폐회기간에 부성장, 자치구 부주석, 부시장, 부주장, 부현장, 부구장의 개별 임면; 성장, 자치구 주석, 시장, 주장, 현장, 구장과 인민법원 원장, 인민검찰원 검찰장이 사정이 있어서 직무를 담당하지 못할 때 본급 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부직 영도자들 중 대리인선을 결정; 대리검찰장을 결정할 때 상위 1급 인민검찰원과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서류를 등록한다.

베이징시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의 국가기관 공직자의 임명과 파면에 관한 조례(北京市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任免国家机关工作人员条例)

**第六条** 市人大常委会任免本市国家行政机关下列人员：

(一) 在市人民代表大会闭会期间，根据市长的提名，在市长缺位时根据市人大常委会主任会议的提名，决定个别副市长的任免。

제6조의 1. 시 인민대표대회의 폐회기간에는 시장의 지명에 근거하여 개별 부시장의 임면을 결정하고, 시장이 공석일 때에는 시 인대 상무위원회 주임회의의 지명에 따라 개별 부시장의 임면을 결정한다.

**第十三条** 市人大常委会会议审议任免案的时候，提请人或者其委托的人员应当到会说明情况。市高级人民法院院长提请任免审判委员会委员、庭长、副庭长、审判员，市人民检察院检察长提请任免检察委员会委员、检察员，一般以书面的形式说明。

市人大常委会会议审议任命案时，提请人应当介绍提名拟任下列职务的人选同市人大常委会组成人员见面：

(一) 市人民代表大会专门委员会副主任委员和委员，市人大常委会副秘书长和各工作机构的主任、副主任。

(二) 市人民政府副市长和秘书长，市人民政府组成部门的局长、主任。

(三) 市高级人民法院副院长和市各中级人民法院院长、副院长。

(四) 市人民检察院副检察长和市人民检察院各分院检察长、副检察长。

제13조. 시 인대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임면건을 심의할 때 제청인 혹은 위탁 받은 사람은 회의에서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시 고급인민법원 원장이 심판위원회 위원, 청장(庭长), 부청장, 심판원의 임면을 제청하고, 시 인민검찰원 검찰장이 검찰위원회 위원, 검찰원의 임면을 제청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시 인대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임면건을 심의할 때 제청인은 아래의 직무에 임명될 피지명인을 소개하고 시 인대 상무위원회 구성원들과 만나게 해야 한다.

(1) 시 인민대표대회 전문위원회 부주임위원과 위원, 시 인대 상무위원회 부비서장과 각 사업기관의 주임, 부주임.

(2) 시 인민정부 부시장과 비서장, 시 인민정부 조직부처의 국장, 주임.

(3) 시 고급인민법원 부원장과 시 중급인민법원 원장, 부원장.

(4) 시 인민검찰원 부검찰장과 시 인민검찰원 분원감찰장, 부검찰장.

**第十四条** 市人大常委会会议审议任免案，可以在全体会议上进行，根据需要也可以分组进行。 提请人或者其委托的人员对审议中提出的问题，应当予以说明。

제14조. 시 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임면건을 심의할 때 전체회의에서 진행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몇 개 조로 나누어 진행할 수도 있다. 제청인 혹은 위탁을 받은 사람은 심의 중에 제기되는 문제에 대하여 설명해야 한다.

**第十五条** 市人大常委会会议表决任免案前，市人大常委会组成人员认为有重大问题需要进一步研究的，经市人大常委会主任或者主任会议提议，出席会议的市人大常委会组成人员的过半数同意，可以暂不付表决。

市人大常委会会议表决任免案前，提请人要求撤回的，应当提出书面报告并说明理由，经市人大常委会主任会议同意，并向市人大常委会报告，对该任免案的审议即行终止。

제15조. 시 인대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임면건을 결정할 때 시 인대 상무위원회 구성원들이 중요한 문제라서 좀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기면 시 인대 상무위원회 주임이나 주임회의의 제안으로 회의에 출석한 시 인대 상무위원회 구성원들의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잠시 표결하지 않을 수 있다.

시 인대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임면건을 결정할 때 제청인이 철회를 요구하려면 서면보고서를 제출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시 인대 상무위원회 주임회의에서 동의하면 시 인대 상무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임면건의 심의를 즉시 중지할 수 있다.

**第十六条** 市人大常委会对本市国家机关工作人员的任免，由市人大常委会全体会议表决通过。 表决采用无记名投票方式、按表决器方式或者其他方式。

采用无记名投票方式进行表决，在表决前从出席会议的市人大常委会组成人员中推选两名

监票人, 对发票、投票、计票进行监督。

采用按表决器方式进行表决, 表决器发生故障时, 可以采用举手或者其他方式进行表决。

제16조. 시 인대 상무위원회가 해당 시의 국가기관 근무자를 임면할 때 해당 시 인대 상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표결하고 통과되어야 한다. 표결은 무기명 투표 방식이나 표결기나 혹은 기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무기명 투표방식으로 표결할 때 표결하기 전 회의에 출석한 시 인대 상무위원회 구성원 중 두 명의 감독자를 선발하고, 투표용지의 발급, 투표, 개표를 감독하도록 한다. 투표기기 방식으로 표결할 때 기기가 고장이 생기면 거수 혹은 기타 방식으로 표결할 수 있다.

**第十七条** 下列事项采用无记名授票方式进行表决：

- (一) 推选市人大常委会代理主任。
- (二) 决定市长的代理入选, 决定个别副市长和市人民政府秘书长、市人民政府组成部门的局长、主任的任命。
- (三) 决定市高级人民法院院长的代理人选, 决定市各中级人民法院院长的任命。
- (四) 决定市人民检察院检察长的代理人选, 决定市人民检察院各分院检察长的任命。

제17조. 아래의 사항에서 무기명 투표방식으로 표결해야 한다.

- (1) 시 인대 상무위원회 대리주임의 선거
- (2) 시장의 대리인선의 결정, 개별 부시장과 시 인민정부 비서장, 시 인민정부의 개별 국의 국장, 주임의 임명 결정
- (3) 시 고급인민법원 원장의 대리인선의 결정, 시 중급인민법원 원장의 임명 결정
- (4) 시 인민검찰원 검찰장의 대리인선의 결정, 시 인민검찰원 분원검찰장의 임명 결정

**第十八条** 下列事项采用按表决器方式逐人进行表决：

- (一) 通过市人民代表大会专门委员会个别副主任委员、部分委员的补充任命和免职, 通过市人大常委会副秘书长和各工作机构主任、副主任的任免。
- (二) 决定个别副市长和市人民政府秘书长、市人民政府组成部门的局长、主任的免职。
- (三) 决定市各中级人民法院院长的免职, 任免市高级人民法院和市各中级人民法院副院长。
- (四) 决定市人民检察院各分院检察长的免职, 任免市人民检察院和市人民检察院各分院副检察长。

제18조. 아래의 사항에서는 투표기기의 방식으로 표결한다.

- (1) 시 인민대표대회 전문위원회의 개별 부주임위원, 일부 위원의 보충임명과 면직, 시 인대 상무위원회의 부비서장과 각 사업기구 주임, 부주임의 임면.
- (2) 개별 부시장과 시 인민정부 비서장, 시 인민정부 구성부처의 국장, 주임의 면직 결정.
- (3) 시의 각 중급인민법원 원장의 면직 결정, 시 고급인민법원과 시의 각 중급인민법원 부

원장의 임면.

(4) 시 인민검찰원 각 분원검찰장의 임면 결정, 시 인민검찰원과 시 인민검찰원의 각 분원 부검찰장의 임면.

○ 부단체장 정수

- 2014년 현재, 베이징시에는 8명의 부단체장이 있음
- 8명의 구체적인 인물은 李士祥(리쉬씨양), 陈刚(첸강), 程红(창공), 张工(장공), 戴均良(다이준리양), 林克庆(린리니칭), 张延昆(장옌쿤), 张建东(장지엔둥)임

○ 부단체장 명칭

- 베이징시 부단체장의 공식명칭은 ‘베이징시 인민정부(北京市人民政府) 부시장(副市长)’으로 칭함

○ 부단체장 임명방식

- 베이징시 부시장은 정기적으로 열리는 베이징시 인민대표대회에서 선거됨
- 베이징시 인민대표대회의 폐회기간에는 시장이 제출한 인선의 임명여부를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에서 결정함
- 이와 같은 임명방식은 아래와 같은 법령에 근거하고 있음
  - 첫째, 헌법 제101조는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해당 급별 인민정부의 성장과 부성장, 시장과 부시장, 현장과 부현장, 구장과 부구장, 향장과 부향장, 진장과 부진장을 선거하고 또 파면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둘째,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각급 인민정부조직법 제22조는 인민정부의 부단체장은 해당급 인민대표대회에서 민주선거의 방식으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44조 제9항에서는 인민대표대회 폐회기간에는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가 부단체장의 개별 임명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령상의 규정이고, 당정일체화의 국가로서 중국은 실질적으로 지도간부에 대한 전문적인 당내 규정, 즉 『당정 영도간부선발 임용조례 (党政领导干部选拔任用工作条例)』 (이하 “조례”로 약칭) 에 근거하여 부단체장의 선출에 개입하고 있음

○ 부단체장 업무와 권한

- 중화인민공화국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정부조직법 제62조에 근거하여 베이징시의 정부업무는 시장책임제(市长负责制)를 실행함
- 시장은 베이징시의 전반업무를 책임지고, 부시장들은 시정부 소속 45개의 국급 부서에서 각자가 맡고 있는 업무에 해당하는 관련부서를 책임지되, 중대한 사항에 관해서는 정부의 상임위원회 또는 전체 회의에서 집단적으로 토론 결정함
- 베이징시의 경우를 보면 부시장들의 구체적인 업무영역은 다음과 같음

부 시장	업 무
李士祥(리쉬씨양)	① 북경시의 발전개혁, 감찰, 재정, 외사, 세수, 통계와 금융업무를 담당하고, ② 구체적인 업무부서로는 시정부 판공청, 발전개혁위원회, 감찰국, 재정국, 외사판공실, 지방세무국, 통계국, 금융공작국, 정책연구실 등이 포함됨
陈刚(첸강)	① 북경시의 국토, 주택, 도시건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② 구체적인 업무부서로는 북경시 국토자원국, 도시기획위원회, 주택과 도시건설위원회, 지질광산탐사개발국, 주택기금관리센터 및 중대한 건설프로젝트 지휘부 등이 포함됨
程红(창공)	① 북경시의 상업무역, 관광, 공상행정관리, 식품의약품감독관리 화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②구체적인 업무부서로는 북경시 상업위원회, 관광발전위원회, 공상행정관리국, 식품의약품감독관리국, 화교업무판공실, 양식국(粮食局), 투자추진국 등이 포함됨
张工(장공)	① 북경시의 과학기술, 경제와 정보화, 환경보호, 국유자산감독관리, 에너지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며,

부시장	업무
	② 구체적인 업무부서로는 북경시 관학기술위원회, 경제와 정보화위원회, 환경보호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중관촌과학기술지역관리위원회, 경제개발구관리위원회 등이 포함됨
戴均良(다이준리양)	① 북경시의 민족과 종교, 민정, 사회건설, 질량기술감독, 지적재산권과 법제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② 구체적인 업무부서로는 북경시 민족사무위원회(종교사무국), 민정국, 사회건설관공실, 질량기술감독국, 지적재산권국, 법제관공실 등이 포함됨
林克庆(린리니칭)	①북경시의 농촌, 농업, 물자원관리, 원림녹화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②구체적인 업무부서로는 북경시 농촌공작위원회, 물자원관리국, 원림녹화국, 농업국, 공원관리센터 등이 포함됨
张延昆(장옌쿤)	① 북경시의 공안, 안전, 사법, 교통, 도시질서관리, 안전생산, 소방 및 고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② 구체적인 업무부서로는 북경시 공안국, 안전국, 사법국, 시정관리위원회, 교통위원회, 안전생산감독관리국, 민방국, 신방관공실(信访), 도시관리종합행정법집행국, 천안문지역관리위원회, 북경서부열차역관리위원회, 감옥관리국, 노동교양공작관리국 등이 포함됨
张建东(장지엔둥)	2014년 11월에 새로 임명되었으며, 아직 업무담당분야가 공포되지 않은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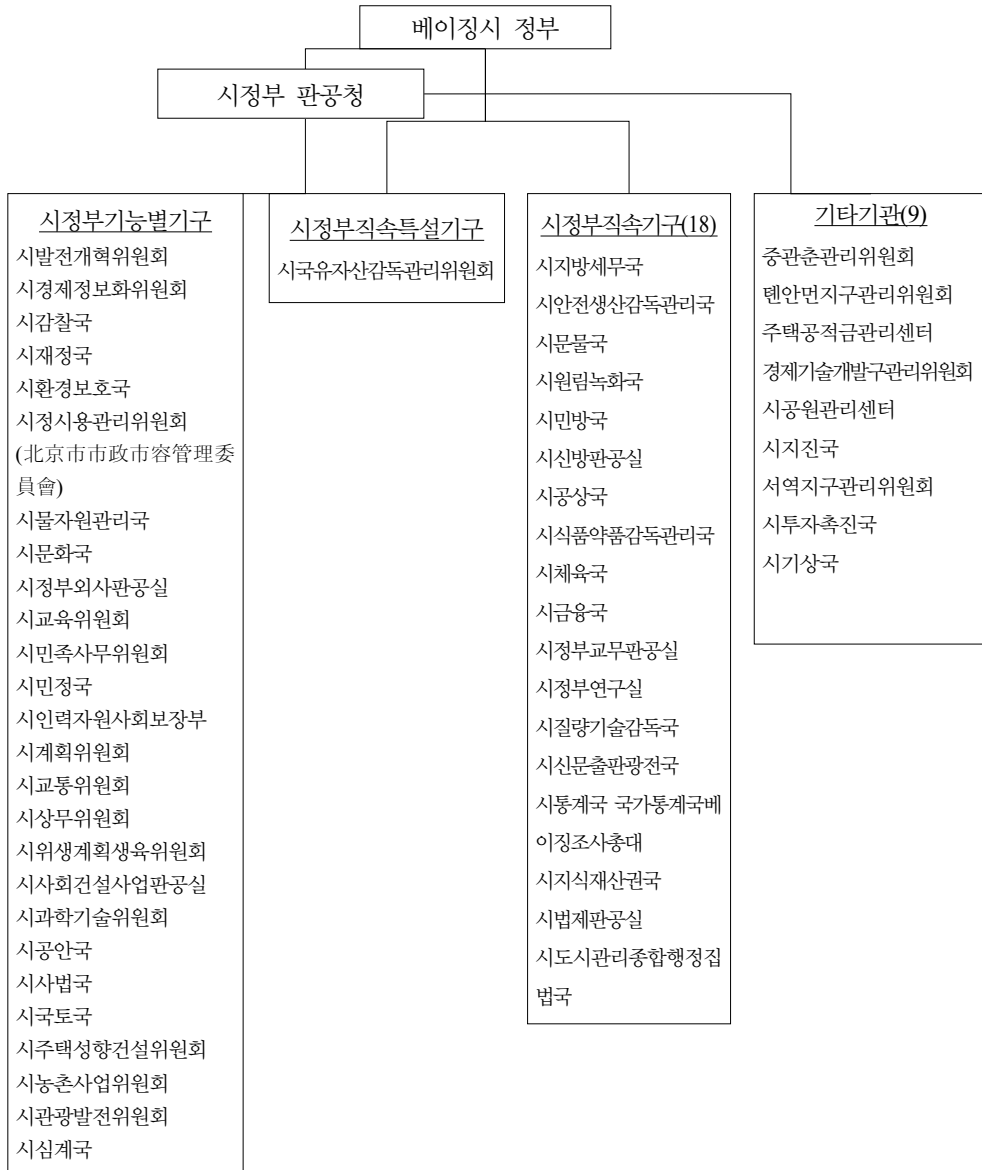
### ○ 부단체장 신분과 임기

- 베이징시 부시장은 모두 경력직 공무원의 신분임
- 임기는 5년이며, 한번 연임할 수 있음

### ○ 부단체장의 보수 수준

- 베이징시 부시장의 보수는 정부에서 공개적으로 공포된 자료가 없음
- 그러나 월 보수액은 대략 인민폐로 1만 위안 ~ 2만 위안 정도(한화 약 180만원 ~ 360만원)로 알려져 있음

○ 베이징시 조직도



○ 소결

- 베이징시의 부시장은 모두 경력직 공무원으로 소관 집행 조직의 최고 책임자임



# 제3장

##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1절 부단체장 제도의 유형화

제2절 정책의 시사점



## 제3장

##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제1절 부단체장 제도의 유형화

- 각 국의 부단체장 제도는 그 다양성으로 인해 유형을 쉽게 특정하기가 어려움
- 각국의 부단체장 제도 운영의 특징을 구분하자면, 크게 부단체장이 수행하는 기능적인 측면과 부단체장 운영이 단체장과 의회 중에 어디에 중심이 있는가에 따라 구분 지을 수 있음
- 기능적인 측면에서 볼 때, 주로 시장을 보좌하여 정책의 기획이나 자문의 역할에 가까운 형태가 있고, 실제 집행조직을 거느리고 행정의 책임자로서 기능하는 형태로 나눌 수 있음
  - 정책기획 및 자문의 역할은 시장실을 운영하고 있는 로스앤젤레스와 런던, 그리고 의회가 내각의 형태로 집행부를 구성하는 레스터에서 나타나는 유형임
  - 그러나 많은 경우 부단체장은 집행조직의 책임자로서 기능하고 있음. 뉴욕은 제1부시장을 비롯해 3명의 부시장이 부서를 나누어 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으며, 일본과 중국 역시 복수의 부지사가 집행부를 나누어 그 운영을 책임지고 있음
  - 프랑스는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30% 이내에서 부단체장을 임명할 수 있으며, 이들은 모두 개별 부서를 책임지고 있음. 또한 독일은 의원들로 구성되어 시 운영의 책임을 지는 참사회 위원 중 2명을 통치시장이 시장으로 임명하는데, 이들 역시 소관 집행조직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음
- 또 하나는 그 운영방식이 단체장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와 의원이

겸직하는 것처럼 의회가 중심인 경우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음

- 부단체장의 운영이 단체장에 있는 경우는 부단체장을 자문·보좌 기관으로 활용하는 로스앤젤레스와 최종 임명권이 단체장에게 있는 뉴욕과 일본이 해당함
- 그러나 많은 경우 부단체장 운영은 의회가 중심이 되고 있음. 이는 의원이 부단체장을 겸하는 영국과 프랑스, 독일의 특징이며, 중국은 의회에서 부단체장을 선거로 선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이러한 기준에 의해 주요 국가의 부단체장 제도를 유형화 하면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부단체장의 기능 운영의 중심	기획·자문 기능	⇔	집행 기능
단체장  ⇕	미국 로스앤젤레스		미국 뉴욕 일본 도쿄 일본 가나가와
의회	영국 런던 영국 레스터		프랑스 파리 프랑스 마르세유 독일 베를린  중국 베이징

- 현재 한국의 부단체장 제도 운영과 가장 유사한 형태는 일본으로 볼 수 있으며, 복수의 부단체장을 두고 개별 부서를 책임지도록 하고 있는 뉴욕시, 베이징시 등은 실질적으로 한국의 실·본부장급의 역할에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음
- 프랑스와 독일은 부단체장이 집행기구의 책임자로 기능하고 있지만, 기관 통합형의 특성상 시장에 대한 정책 자문과 기획 기능을 비롯해 정치적 책임까지 포괄적으로 지고 있음

## 제2절 정책의 시사점

- 부단체장 제도는 각 국의 정치·행정 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 최적의 모형을 쉽게 판단할 수는 없음
  - 기관통합형을 취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복수의 부단체장을 두고는 있으나 기관구성의 형태가 다른 우리나라에 벤치마킹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 특히 프랑스 파리시와 마르세유시는 시의회 의원이면서 자치구의 수장이 부단체장을 겸직하는 독특한 정치제도로 인해 많은 수의 부단체장을 둘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를 우리나라와 직접 비교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음
  - 다만, 기관통합형 국가들의 부단체장 제도는 향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유형이 다양화된다면, 제도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조사 대상 국가 모두 복수의 부단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영국의 레스터 시는 부단체장이 1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Assistant City Mayor(보조시장)을 운영함으로써 복수의 부단체장이 있는 것과 같은 운영을 하고 있으며, 여기서 부단체장은 시장 궤위 시 제1순위 대행자의 의미가 강함
  - 부단체장의 정수는 런던(법정부시장 1명), 뉴욕, 영국 레스터, 프랑스, 독일, 일본처럼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로스앤젤레스, 중국처럼 그 수를 정하지 않고 있는 사례도 있음
  - 또한 정수를 법에 정해놓고 있는 경우에도 뉴욕이나 프랑스,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이 정수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또한 시장의 대행 역할만 하는 부단체장 제도는 운영하지 않고 있음. 다시 말해 복수의 부단체장이 있는 경우 각자의 업무 영역이 있으며, 집행기능을 하는 경우 해당 업무의 책임자인 동시에 부단체장의 지위를 갖고 있음

- 이는 실질적으로 한국의 실장 혹은 본부장과 유사한 지위를 가지면서 대외적으로는 부단체장으로 대표되고 있는 뉴욕이나 베이징이 대표적인 경우임
- 해외 사례를 통해 한국의 부단체장 제도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일본처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되 그 범위를 상위법에 규정하는 방안
    - 전국적인 통일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여줄 수 있음
    - 부단체장이 늘어나는 경우 재정적 부담 문제가 있음
  - 뉴욕이나 중국처럼 실·본부장급에 부단체장 직함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
    - 부단체장 수는 늘되 예산이나 직급의 변동은 최소화 할 수 있음
    - 직함의 지나친 상향으로 인해 조직 운영이 관료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음
  - 로스앤젤레스처럼 광역 단체장 정책보좌진 일부에 부단체장 직함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
    - 단체장의 임기 동안만 부단체장 직함을 허용함으로써, 단체장의 자율성을 보장해 줄 수 있음
    - 정치적 배분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가 제기 될 수 있음